새로운전북 특별한기회

2024. 5. 8.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목 차

Ⅰ. 결산검사 경과 5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6

Ⅲ. 세입세출 결산.....9

Ⅳ. 기금결산 18

Ⅴ. 재무제표 20

Ⅵ. 성과보고서 22

Ⅶ. 기타 결산

1. 채권현재액 24

2. 채무현재액.....25

3. 공유재산현재액.....26

4. 물품현재액.....27

Ⅷ.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29

1. 개선 및 권고사항(5).....31

2. 건의사항(1).....45

3. 수범사례(5).....48

Ⅸ. 현장방문결과 52

Ⅹ.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53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의견서

수신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4년 4월 29일 ~ 5월 8일(10일간)

○ 검사위원

- ■ 대표위원 : 박 정 규(도의원)
- ■ 위 원 : 윤 영 숙(도의원)
- ■ 위 원 : 한 정 수(도의원)
- ■ 위 원 : 이 철 희(회계사)
- ■ 위 원 : 김 현 승(세무사)
- ■ 위 원 : 이 한 철(세무사)
- ■ 위 원 : 강 군 석(전직 공무원)
- ■ 위 원 : 박 종 배(전직 공무원)
- ■ 위 원 : 안 동 환(전직 공무원)
- ■ 위 원 : 육 홍 기(전직 공무원)
- ■ 위 원 : 이 동 현(전직 공무원)
- ■ 위 원 : 이 주 철(전직 공무원)
- ■ 위 원 : 장 윤 희(전직 공무원)
- ■ 위 원 : 정 재 철(전직 공무원)

결산검사 의견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24년 5월 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1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 지에 대하여 결산서와 회계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었으며, 현장 방문도 실시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 등은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 세입세출외현금 효율적 관리로 역대 최고 이자수입 달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징수, 분만 및 출산 취약지역 지원사업 추진, 대형재난 통합 강화 119특수대응단 신설 등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최소화, 신속한 사업정산으로 재정의 투명성 강화, 보조금반환수입 수납 철저, 각종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고, 도로 등 도자체 SOC예산 확대 필요 등 5건을 개선 권고하였고 건의사항으로 도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박 정 규 (서명)	검사위원	윤 영 숙 (서명)
검사위원	한 정 수 (서명)	검사위원	이 철 희 (서명)
검사위원	김 현 승 (서명)	검사위원	이 한 철 (서명)
검사위원	황 선 철 (서명)	검사위원	강 군 석 (서명)
검사위원	박 종 배 (서명)	검사위원	안 동 환 (서명)
검사위원	육 홍 기 (서명)	검사위원	이 동 현 (서명)
검사위원	이 주 철 (서명)	검사위원	장 윤 희 (서명)
검사위원	정 재 철 (서명)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검사 결과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4. 4. 29. ~ 5. 8.(1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 표 위 원	박 정 규	결산검사 총괄	
위 원 (간 사)	이 동 현	결산검사 업무 총괄 조정	
위 원	윤 영 숙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한 정 수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이 철 희	결산검사 업무 전반(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위 원	김 현 승	결산검사 업무 전반(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위 원	이 한 철	결산검사 업무 전반(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위 원	황 선 철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강 군 석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박 종 배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안 동 환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육 홍 기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이 주 철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장 윤 희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정 재 철	결산검사 업무 전반	

3. 결산검사 세부일정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4. 29 ~ 4. 30.	결산검사 보고회 및 자료요구	
5. 1. ~ 5. 2.	결산검사 위한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5. 3.	현장방문(임실 붕어섬생태공원 등 재정사업현장)	
5. 4. ~ 5. 7.	결산검사를 위한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5. 8.	결산검사 폐회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세계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5년 평균 세입 6.8%, 세출 7.2% 증가하였고, 결산상 잉여금은 4.8%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세 입	7,159,533	8,632,467	9,482,071	9,630,234	9,303,507
세 출	6,843,941	8,255,016	8,996,732	9,192,317	9,044,176
결산상잉여금	315,592	377,451	485,339	437,917	259,331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

2023년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14,636,19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6,180백만원(0.5%)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46,40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215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A)	총부채 (B)	순자산 (C=A-B)	총비용 (D)	총수익 (E)	운영차액 (F=D-E)
2023년	15,476,542	840,350	14,636,192	8,353,390	8,399,792	△46,402
2022년	15,364,390	794,378	14,570,012	8,319,848	8,696,465	△376,617
증 감	112,152	45,972	66,180	33,542	△296,673	330,215

○ 최근 5년간 채무 추이

최근 5년간 채무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고 외부채무는 없으며, 2023년 채무는 지역개발기금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의한 것으로 2023년 발생액에 비해 소멸액('18년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실시)규모가 작아 전년대비 35,534백만원(5.2%)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회계 차입금(a)	-	-	-	-	-
특별회계 및 기금 차입금(b)	635,374	659,098	666,514	688,012	723,546
채무부담행위(c)	-	-	-	-	-
채무 총합계(d=a+b+c)	635,374	659,098	666,514	688,012	723,546

(2) 재정건전성

○ 재정자립도

2022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재정공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7085, 2023. 6. 29.)에 의하여 결산기준으로 작성한 재정자립도는 총수익에서 자체조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며,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 수익(지방교육세 제외)과 세외수입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5.7%이고 재정자주도는 41.3%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자체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수익과 국고보조금수익 등 이전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회계연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 표 명	산 식	비 율
재 정 자 립 도	(자체세입*) 2,121,756백만원 / (총세입) 8,246,040백만원 × 100	**25.7%**
재 정 자 주 도	(자주재원**) 3,405,815백만원 / (총세입) 8,246,040백만원 × 100	**41.3%**

* 자체세입 = 지 방 세(1,964,355백만원) + 세 외 수입(157,401백만원)
** 자주재원 = 자체세입(2,121,756백만원) + 지방교부세(1,284,059백만원)

○ 안정성

안정성은 총수지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순자산 비율로 구성되며 총수지 비율은 총비용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재정운영의 수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총수지 비율은 99.4%이다.

부채비율은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로 부채는 그 성격상 미래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순자산에 비해 부채규모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재정운영이 그만큼 경직되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전북특별자치도의 부채비율은 5.7%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자산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도로나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를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으로 나눈 유동비율은 비율이 작을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유동비율은 13.8%로 안정적 수치를 보이고 있다.

순자산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순자산 비율은 94.6%로 매우 양호하다.

〈2023회계연도 안정성 지표 분석〉

지 표 명	산 식	비율
총수지비율	(총비용 8,353,390백만원 / 총수익 8,399,792백만원) × 100	99.4%
부 채 비 율	(총부채 840,350백만원 / 순자산 14,636,192백만원) × 100	5.7%
유 동 비 율	(유동부채 161,637백만원 / 유동자산 1,171,841백만원) × 100	13.8%
순자산비율	(순자산 14,636,192백만원 / 총자산 15,476,542백만원) × 100	94.6%

Ⅲ.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요약〉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 =A-B)
합 계	9,310,193	9,303,507	9,044,176	259,331
일 반 회 계	8,254,905	8,246,040	7,999,174	246,866
기 타 특 별 회 계	1,055,288	1,057,467	1,045,002	12,465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259,331	120,714 (28,789)	26,736 (10,701)	-	5,120	106,761
일 반 회 계	246,866	118,588 (28,789)	26,679 (10,701)	-	4,931	96,668
기 타 특 별 회 계	12,465	2,126	57	-	189	10,093

※ 명시·사고이월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03,507백만원으로 예산현액 9,310,193백만원보다 6,686백만원이 과소 수납되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97.2%인 9,044,176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59,331백만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 120,714백만원, 사고이월비 26,736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5,120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6,761백만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106,761백만원임이 확인되었다.

2. 일반회계

2-1.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 (다-가)	정리보류액 (라)	미수납액 (나-다-라)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 (다/가)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다/나) (%)
합 계	**8,254,905**	**8,274,785**	**8,246,040**	**△8,865**	**1,914**	**26,831**	**99.9%**	**99.7%**
지 방 세	1,887,763	1,989,794	1,964,355	76,592	1,882	23,557	104.1%	98.7%
세 외 수 입	144,531	160,707	157,401	12,870	32	3,274	108.9%	97.9%
지방교부세	1,217,471	1,284,059	1,284,059	66,588	-	-	105.5%	100.0%
보 조 금	4,424,773	4,367,315	4,367,315	△57,458	-	-	98.7%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80,367	472,910	472,910	△107,457	-	-	81.5%	100.0%

(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내역

① 경기침체·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량은 감소하였으나 예상보다 호전되어 취득세 14,962백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세입은 감소하였으나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3.7%→25.3%)으로 55,557백만원이 증가하는 등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76,592백만원(4.1%)이 초과 수납됨

② 시·군 및 민간에 보조한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인 보조금반환수입 9,418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759백만원, 그외수입 1,721백만원이 초과 수납되는 등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2,870백만원(8.9%)이 초과 수납됨

③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1,217,471백만원, 실제수납액 1,284,059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66,042백만원 및 특별교부세 545백만원이 초과 수납됨

④ 보조금은 예산현액 4,424,773백만원 보다 57,458백만원이 적은 4,367,315백만원이 수납됨

(나) 미수납 내역

① 지방세는 정리보류액 1,882백만원을 제외하고, 23,557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예산현액 대비 1.25%)
지방세 미수납액은 무재산 1,065백만원, 행방불명 343백만원, 납세태만 9,345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2,787백만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314백만원, 격리 또는 입원 10백만원, 소송계류 1,840백만원, 국외이주 15백만원, 자금압박 5,303백만원, 납기미도래 1,294백만원, 기타 1,241백만원의 사유로 발생함

② 세외수입은 정리보류액 32백만원을 제외하고, 3,274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예산현액 대비 2.27%)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무재산 1백만원, 행방불명 1백만원, 납세태만 1,563백만원, 폐업 또는 부도 59백만원, 납기미도래 172백만원, 기타 1,478백만원의 사유로 발생함

2-2.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라)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액 (나/가)	이월액 (다/가)	집행잔액 (라/가)
합 계	**8,254,905**	**7,999,174**	**184,757**	**9,715**	**61,259**	**96.9%**	**2.2%**	**0.7%**
일반및공공행정	656,782	641,661	9,923	19	5,179	97.7%	1.5%	0.8%
공공질서및안전	540,063	539,618	300	6	139	99.9%	0.1%	0.0%
교 육	223,908	223,893	-	-	15	100.0%	0.0%	0.0%
문화 및 관광	465,925	408,282	45,546	10	12,086	87.6%	9.8%	2.6%
환 경	501,590	494,605	1,722	4,984	280	98.6%	0.3%	0.1%
사 회 복 지	2,940,977	2,940,009	512	24	432	100.0%	0.0%	0.0%
보 건	171,851	164,851	230	3,510	3,260	95.9%	0.1%	1.9%
농림해양수산	1,425,500	1,377,602	45,152	730	2,015	96.6%	3.2%	0.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84,973	448,463	18,203	-	18,306	92.5%	3.8%	3.8%
교통 및 물류	256,231	218,597	36,721	405	507	85.3%	14.3%	0.2%
국토및지역개발	310,838	284,350	26,309	24	155	91.5%	8.5%	0.0%
과 학 기 술	15,620	15,520	100	-	-	99.4%	0.6%	0.0%
예 비 비	13,817	-	-	-	13,817	0.0%	0.0%	100.0%
기 타	246,830	241,723	38	2	5,067	97.9%	0.0%	2.1%

(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254,905백만원, 지출액은 7,999,174백만원(예산현액의 96.9%)으로, 2024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84,757백만원, 집행잔액은 0.7%인 61,259백만원임

(나) 2024년도로 이월되는 내역

① 명시이월은 147,377백만원임 (자금없는 28,789백만원 포함)

② 사고이월은 37,380백만원임 (자금없는 10,701백만원 포함)

2-3. 2023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구 분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비고
일 반 회 계	8,246,040,247,789	8,246,040,247,789	-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장부와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 원)

구 분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비고
일 반 회 계	7,999,174,027,203	7,999,174,027,203	-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장부와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3. 특별회계

3-1. 세입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 회계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실제수납액 (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과소수납액 (다-가)	정리 보류액 (라)	미수납액 (나-다-라)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다/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다/나)
합 계	**1,055,288**	**1,058,739**	**1,057,467**	**2,179**	**31**	**1,242**	**100.2%**	**99.9%**
세 외 수 입	**45,962**	**48,555**	**47,283**	**1,321**	**31**	**1,242**	**102.9%**	**97.4%**
경상적세외수입	1,828	1,815	1,815	△13	-	-	99.3%	100.0%
임시적세외수입	37,366	39,669	38,422	1,056	31	1,216	102.8%	96.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768	7,072	7,046	278	-	26	104.1%	99.6%
보 조 금	**488,726**	**488,726**	**488,726**	**-**	**-**	**-**	**100.0%**	**100.0%**
보전수입및내부거래	**520,600**	**521,458**	**521,458**	**858**	**-**	**-**	**100.2%**	**100.0%**
보 전 수 입 등	37,793	38,225	38,225	432	-	-	101.1%	100.0%
내 부 거 래	482,807	483,233	483,233	426	-	-	100.1%	100.0%

(가) 예산현액 대비 과소 및 초과 수납액 내역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은 2,179백만원으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1,528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백만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669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소방특별회계 13백만원, 동부권특별회계 10백만원 과소 수납되었음

(나) 미수납액 내역

①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없음

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 없음

③ 동부권 특별회계 10백만원

④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161백만원

⑤ 소방 특별회계 66백만원

⑥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5백만원

3-2. 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라)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액 (나/가)	이월액 (다/가)	집행잔액 (라/가)
합 계	**1,055,288**	**1,045,002**	**2,183**	**197**	**7,906**	**99.0%**	**0.2%**	**0.7%**
농어촌주택사업	8,657	8,570	-	-	87	99.0%	0.0%	1.0%
의료급여기금	617,931	611,290	-	-	6,641	98.9%	0.0%	1.1%
동 부 권	36,704	36,693	-	-	11	100.0%	0.0%	0.0%
학교용지부담금	18,686	18,499	-	-	187	99.0%	0.0%	1.0%
소 방	372,699	369,348	2,183	197	971	99.1%	0.6%	0.3%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611	602	-	-	9	98.5%	0.0%	1.5%

(가)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55,288백만원 중 지출액은 1,045,002백만원(예산현액의 99.0%)으로, 2024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183백만원(예산현액의 0.2%)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97백만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7%인 7,906백만원임

(나) 2024년도로 이월되는 내역

① 명시이월

- 소방 특별회계 2,126백만원

② 사고이월

- 소방 특별회계 57백만원

3-3. 2023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구 분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합 계	**1,057,466,999,741**	**1,057,466,999,741**	**-**
농어촌주택사업	10,184,822,045	10,184,822,045	-
의료급여기금	617,936,361,146	617,936,361,146	-
동부권	36,693,464,450	36,693,464,450	-
학교용지부담금	19,355,832,006	19,355,832,006	-
소방	372,685,202,044	372,685,202,044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611,318,050	611,318,050	-

(가)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2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장부와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원)

구 분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합 계	**1,045,001,827,609**	**1,045,001,827,609**	**-**
농어촌주택사업	8,570,455,000	8,570,455,000	-
의료급여기금	611,288,764,750	611,288,764,750	-
동부권	36,693,377,620	36,693,377,620	-
학교용지부담금	18,499,152,000	18,499,152,000	-
소방	369,347,800,139	369,347,800,139	-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602,278,100	602,278,100	-

(나)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2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세출장부와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4.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가) 예산이용은 없으며,

(나) 예산전용은 4개 부서 4건 6,737백만원이며

(다) 예산이체는 49건 174,570백만원으로, ’23. 6월 조직개편 따라 발생한 것으로 예산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5. 채무부담행위

2023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 신규 발생액은 없다.

6. 예비비 지출

(단위: 백만원)

회계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b-c)
합 계	**51,593**	**30,519**	**28,468**	**560**	**1,491**
일 반 회 계	**44,286**	**30,468**	**28,418**	**560**	**1,490**
일 반 예 비 비	11,027	6,869	4,843	560	1,466
재 해 재 난 목 적	33,219	23,599	23,575	-	24
내 부 유 보 금	40	-	-	-	-
기 타 특 별 회 계	**7,307**	**51**	**50**	**-**	**1**
일 반 예 비 비	7,307	51	50	-	1
내 부 유 보 금	-	-	-	-	-

예비비 예산액은 51,593백만원이며 호우 산림피해 복구지원(‘23.7.9~7.19) 사업 외 48건 30,519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468백만원을 집행하고 561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9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사용내역을 보면 일반예비비로 4,893백만원, 재해 및 재난목적 예비비로 23,575백만원을 사용하였다.

Ⅳ. 기금결산

○ 현 황

(단위: 백만원)

종류별		2022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		2023년도말 조성액 (a+b-c)	전년대비 증감액
			조성액 (b)	사용액 (c)		
합 계		**1,011,799**	**237,146**	**206,696**	**1,042,249**	**30,450**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207,276	30,877	21,185	216,968	9,692
	투자계정	-	12,334	6,843	5,491	5,491
사회적경제기금		28	510	492	46	1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9,600	24,501	9,315	74,786	15,186
	재정안정화계정	2,735	75	-	2,810	75
지역개발기금		623,222	139,472	151,038	611,656	△11,566
재난관리기금		18,491	15,023	6,748	26,766	8,275
고향사랑기금		-	235	-	235	235
체육진흥기금		10,121	198	180	10,139	18
자활기금		4,999	154	369	4,784	△215
재해구호기금		14,723	7,408	1,315	20,816	6,093
성평등기금		3,378	76	68	3,386	8
노인복지기금		2,131	48	67	2,112	△19
식품진흥기금		9,521	608	913	9,216	△305
환경보전기금		2,558	1,227	3,385	400	△2,158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5,353	967	-	6,320	967
농림수산발전기금		36,818	3,256	4,746	35,328	△1,490
남북교류협력기금		10,845	177	32	10,990	145

○ 내　　용

검사결과 지역개발기금 등 16개 기금의 2023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042,24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0,45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당해연도 중 237,146백만원을 조성하였고, 206,696백만원을 사용하였다.

의무적으로 적립할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매년도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따라 2023년도 중 재난관리기금 15,023백만원, 재해구호기금 7,408백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적립 비율에 상응하게 기금을 적립·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23회계연도의 기금 지출액은 206,696백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아울러, 2023년말 조성액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29,600백만원(농림수산발전기금 16,580백만원, 환경보전기금 400백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400백만원, 식품진흥기금 5,700백만원, 체육진흥기금 4,220백만원, 자활기금 400백만원, 성평등기금 9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역개발기금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예탁한 3,890백만원과 일반회계에 예탁한 198,56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Ⅴ. 재무제표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5,476,542**	**15,364,390**	**112,152**	**0.7%**
Ⅰ. 유 동 자 산	1,171,841	1,284,173	△112,332	△8.7%
Ⅱ. 투 자 자 산	391,478	335,956	55,522	16.5%
Ⅲ. 일반유형자산	893,414	863,455	29,959	3.5%
Ⅳ. 주민편의시설	283,593	253,342	30,251	11.9%
Ⅴ. 사회기반시설	12,725,395	12,617,751	107,644	0.9%
Ⅵ 기타비유동자산	10,821	9,713	1,108	11.4
부 채	**840,350**	**794,378**	**45,972**	**5.8%**
Ⅰ. 유 동 부 채	161,637	175,006	△13,369	△7.6%
Ⅱ. 장기차입부채	643,936	597,346	46,590	7.8%
Ⅲ. 기타비유동부채	34,777	22,026	12,751	57.9%
순 자 산	**14,636,192**	**14,570,012**	**66,180**	**0.5%**
Ⅰ. 고정순자산	13,910,548	13,742,113	168,435	1.2%
Ⅱ. 특정순자산	455,621	406,854	48,767	12.0%
Ⅲ. 일 반 순 자 산	277,023	421,045	△151,022	△35.9%

2023회계연도말 전북특별자치도의 총자산은 15,476,542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5,364,390백만원보다 112,152백만원(0.7%)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 및 하천 등의 공공시설자산인 사회기반시설의 107,644백만원(0.9%) 증가에 따른 것이며, 주민편의시설은 30,251백만원(11.9%), 일반유형자산은 29,959백만원(3.5%), 투자자산은 55,522백만원(16.5%), 보증금 등 기타비유동자산은 1,108백만원(11.4%)이 증가하였고, 유동자산은 112,332백만원(8.7%)가 감소하였다. 또한, 2023회계연도말 전북특별자치도의 부채는 840,350백만원으로 전년도의 794,378백만원보다 45,972백만원(5.8%)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동차 등록, 계약체결 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 - 나)	2,854,633	2,845,941	8,692	0.3%
가. 사업총원가	7,764,523	7,771,693	△7,170	△0.1%
나. 사업수익	4,909,891	4,925,752	△15,861	△0.3%
Ⅱ. 관리운영비	544,201	500,690	43,511	8.7%
Ⅲ. 비배분비용	44,666	47,466	△2,800	△5.9%
Ⅳ. 비배분수익	152,013	184,820	△32,807	△17.8%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3,291,487	3,209,277	82,210	2.6%
Ⅵ. 일반수익	3,337,889	3,585,894	△248,005	△6.9%
Ⅶ. 재정운영결과 (Ⅴ - Ⅵ)	**△46,402**	**△376,617**	**330,215**	**-**

전북특별자치도 2023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7,764,523백만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4,909,891백만원을 차감한 2,854,633백만원이며,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일반공공행정'(602,543백만원)과 '사회복지'(587,448백만원)이었다.

또한, 2023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535,057백만원과 경비 9,517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운영비 8,658백만원과 기타비용 36,00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71,990백만원과 기타수익 80,02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3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영결과는 △46,402백만원으로 전년도의 △376,617백만원보다 330,215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등 자체조달수익 12,611백만원과 정부간이전수익 275,211백만원이 감소한 결과이다.

Ⅵ.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백만원)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2023 결산액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D)	달성률 (B+C)/A	
계	**23**	**160**	**377**	**64**	**305**	**8**	**97.8%**	**9,044,176**
기업유치지원실	1	15	21	5	14	2	90.5%	307,237
대 변 인	1	1	1	-	1	-	100%	1,725
감 사 관	1	1	3	1	2	-	100%	634
인 권 담 당 관	1	1	3	1	2	-	100%	584
기 획 조 정 실	1	8	21	5	16	-	100%	858,537
도 민 안 전 실	1	5	14	2	11	1	92.9%	177,633
특별자치도추진단	1	1	3	1	2	-	100%	2,761
자 치 행 정 국	1	5	19	6	13	-	100%	163,602
문화체육관광국	1	5	20	4	16	-	100%	378,114
복지여성보건국	1	15	33	8	25	-	100%	3,554,144
환 경 녹 지 국	1	11	23	3	20	-	100%	639,536
건 설 교 통 국	1	9	21	1	19	1	95.2%	459,247
미 래 산 업 국	1	8	18	-	18	-	100%	155,371
농생명축산식품국	1	6	24	3	19	2	91.7%	1,035,783
교육소통협력국	1	8	12	-	12	-	100%	67,420
새만금해양수산국	1	4	10	2	8	-	100%	215,926
소 방 본 부	1	5	15	-	15	-	100%	696,757
의 회 사 무 처	1	4	12	1	11	-	100%	15,923
농 업 기 술 원	1	10	32	2	30	-	100%	63,762
인 재 개 발 원	1	3	6	1	5	-	100%	7,964
보건환경연구원	1	3	12	-	11	1	91.7%	12,586
자치경찰위원회	1	2	4	-	4	-	100%	12,639
사 업 소	1	30	50	18	31	1	98%	216,291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제2조의2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23개)-정책사업목표(160개)-성과지표(377개)'로 구성된 예산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표별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2023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달성도 분석 결과, 전체 달성도는 97.8%이며, 달성도가 130%이상인 초과달성 지표는 64개, 100~130%미만의 달성 지표는 305개, 100%미만의 미달성 지표는 8개이다.

Ⅶ. 기타결산

1. 채권현재액

○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종류별		'23년말 현재액	'22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합 계		**236,162**	**185,446**	**50,716**	**27.3**
보 증 금 채 권		**937**	**472**	**465**	**98.5**
	사 무 실 임 대	690	350	340	97.1
	전 화 선 예 치 금	14	15	△1	△6.7
	기 타	233	107	126	117.8
융 자 금 채 권		**235,195**	**184,951**	**50,244**	**27.2**
	공무원학자대여금	15,669	15,913	△244	△1.5
	지 역 개 발	194,754	144,484	50,270	34.8
	주 택 융 자	22,088	22,347	△259	△1.2
	기 타	2,684	2,207	477	21.6
기 타 채 권		**30**	**23**	**7**	**30.4**
	기 타	30	23	7	30.4

○ 내　　용

결산검사 결과 채권의 2023년말 현재액은 236,162백만원이며, 전년대비 50,716백만원(27.3%) 증가하였다.

채권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 937백만원, 융자금 채권 235,195백만원, 기타 채권 30백만원이다.

주된 증감사유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50,270백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금이 438백만원, 사무실임대보증금이 340백만원 증가하였고, 주택융자금 259백만원, 공무원학자금 융자금 244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현재액

○ 현　　황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22년말 현재액 (a)	발생액 (b)	소멸액 (c)	2023년말 현재액 (a+b-c)
합　　계	688,012	125,726	90,192	723,546
일 반 회 계	-	-	-	-
특 별 회 계	-	-	-	-
지역개발기금	688,012	125,726	90,192	723,546

○ 내　　용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35,534백만원이 증가한 723,546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중 125,72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90,192백만원이 소멸하였다. 채무 종류별로 지역개발 채권 723,546백만원, 정부차입금 0원, 민간차입금 0원이다.

향후 5년간 채무 상환예정은 다음과 같다.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이후
합　계	723,546	79,610	182,836	174,234	161,572	125,294
기　금	723,546	79,610	182,836	174,234	161,572	125,294

현재 시점에서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는 1.05% ~ 2.5% 복리이고 상환기간은 5년거치 만기일시상환임을 확인하였다.

3. 공유재산현재액

○ 종류별 현황

(단위 : 개, 천㎡, 백만원)

종 류 별	2023년말현재액		2022년말현재액		증 감 액	
	면적(수량)	가격	면적(수량)	가격	면적(수량)	가격
합 계		**14,253,554**		13,965,434		288,120
토 지	**149,005**	**641,241**	148,922	620,637	83	20,604
건 물	**647**	**886,041**	634	833,806	13	52,235
입 목 죽	**7,101**	**1,614**	7,101	1,614		
공 작 물	**3,506**	**12,189,581**	3,459	12,129,630	47	59,951
선 박	**4**	**17,479**	8	15,793	△4	1,686
항 공 기	**1**	**1,802**	1	1,802		
무 체 재 산	**163**	**419**	160	416	3	3
유 가 증 권	**27,666,439**	**161,027**	27,644,828	151,685	21,611	9,342
용 익 물 권	**30**	**4,612**	25	4,342	5	270
회 원 권	**41**	**798**	41	798		
건설중인 재산	**95**	**348,940**	56	204,911	39	144,029

2023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전년대비 288,120백만원이 증가한 14,253,554백만원이다.

공유재산 종류별 전년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도로·하천부지 등) 83천㎡ 20,604백만원, 건물(스마트융복합 멀티플렉스, 재난관리통합지원센터등) 52,235백만원, 공작물(도로·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구축물 등) 59,951백만원, 유가증권(소부장 모태펀드 등) 9,342백만원, 무체재산(새천년품종보호권 등) 3백만원, 2023년말 현재 건설중인 재산 144,029백만원 등이 증가하였다.

4. 물품현재액

○ 현　　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22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23년말 현재액	전년도 증 감
		취득	처분		
수 량	3,662	524	391	3,795	133
금 액	108,268	24,159	13,578	118,849	10,581

○ 내　　용

검사결과 2023년말 정수물품 보유현황은 3,795점에 118,849백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년대비 보유수량은 133점이 증가하였고, 보유금액은 10,581백만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조직개편으로 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이 신설됨에 따른 소요물품 증가가 주요인으로 구급차, 소방물탱크차 화재조사차 등 소방차량(9종 28대) 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Ⅷ

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필요

2. 신속한 사업정산으로 재정의 투명성 강화

3. 보조금반환수입 수납 철저

4. 각종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고

5. 도로 등 도자체 SOC예산 확대 필요

1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필요

□ 현 황

○ 2023년 예산전액불용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9,450**	**3,050**	**6,400**	**0**	**9,450**		
생 활 환 경 과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직접)	90	50	40	-	90	0.0	
주 력 산 업 과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9,360	3,000	6,360	-	9,360	0.0	

○ 집행률 50% 이하 사업현황(사업비 5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	비고
		계	국비	도비				
계		**6,748**	**3,285.5**	**3,462.5**	**373**	**6,375**		
감 염 병 관 리 과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위탁사업	6,571	3,285.5	3,285.5	313	6,258	4.8	
농 식 품 인력개발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컨설팅 지원	177	-	177	60	117	34.0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문제점

○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및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예산을 산정하여 합리적으로 편성·집행되어야 하나,

○ 생활환경과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예산액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고,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위탁사업’ 등 2개 사업은 집행률이 50% 이하로 극히 미미하게 집행되어 열악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음

□ 개선사항

○ 예산편성 시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신속한 집행 계획 수립 및 선행절차 진행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 삭감 조정하여 현안사업에 재원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관련부서 : 생활환경과, 주력산업과, 농식품인력개발원, 감염병관리과

2 신속한 사업정산으로 재정의 투명성 강화

□ 현 황

○ ’22년 교육청 연계사업 미정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반납예정일	비고
계	**3건**	**69,607**	**67,041**	**2,616**		
여성가족과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지원	5,291	4,544	747	2024.5월	
사회복지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64,260	62,469	1,840	2024.5월	
사회복지과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56	28	29	2024.5월	

○ 국고보조사업(‘21년~‘22년) 집행잔액 미반납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명	결산연도	사 업 명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반납대상 금액	미반납액	비고
계		**4건**	**9,725**	**8,095**	**1,630**	**1,630**	
문화예술과	2021	세계 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315	267	48	48	
여성가족과	2022	요보호 아동 지원 및 권익증진	13	1	12	12	
노인복지과	2022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8,449	6,904	1,545	1,545	
감염병관리과	2022	보건소결핵관리사업	948	923	25	25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계획

□ 문제점

○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각종 관련 법규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 등 정산 의무가 있는 사업은 사업완료 후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22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등 교육청 연계사업 3건은 사업 정산 잔액 26억원을 ‘23년 정산후 교육청에 반납하였어야 함에도 ’24년 추경에 반납금을 편성하였음

○ ‘21년~’22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사업은 4건 16억원으로 사업 완료 후 빠른 정산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강화 필요

□ 개선사항

○ 교육청 등 타 기관과 협력사업 추진시 신속 정확한 사업 정산으로 행정 신뢰성 강화 필요

○ 보조사업 추진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도록 사업이 집행되고 정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

※ 관련부서 :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노인복지과, 감염병관리과

3 보조금반환수입 수납 철저

□ 현 황

○ ‘23회계연도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과목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계	**61,520**	**59,658**	**1,844**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52,697	51,033	1,646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6,917	6,861	56
지난년도수입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833	1,757	76
지난년도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73	7	66

<관계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등)

□ 문제점

○ 보조금반환금 미수납액은 당해연도 1,702백만원, 과년도 14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반환확정 금액에 대하여 바로 수납받을 수 있도록 미수납액 발생 사업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됨

- 시도비보조금의 경우 사업 정산 후 시군추경에 반납금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독려가 필요하며,
- 과년도 미반납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과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대상에 대한 재고지 등의 징수노력이 요구됨
- 또한, 부과되지 않은 장기 미정산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정산절차를 추진하여 세입이 누락되지 않고 반영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개선사항

○ 미수납액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 정산내역, 시군 예산편성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또한, 보조사업 등 정산 의무가 있는 사업은 사업완료 후 즉시 정산하고 사용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 당해연도 추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익년도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관련부서: 일자리민생경제과, 금융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문화산업과, 관광산업과, 체육정책과, 문화유산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기후환경정책과, 생활환경과, 지역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건축과, 탄소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교육협력추진단, 대외협력과, 해양항만과, 도로관리사업소

첨부 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내역(1백만원 이상)

□ 2023회계연도

부서명	회계과목	미수납액 (단위:백만원)	주요사유
계		1,700	
일자리민생경제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8	22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312,630원 수납)
금융사회적경제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64	22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등 반납
청 년 정 책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	현재 수납처리
사 회 재 난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9	감액처리 등
자 연 재 난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57	22년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7,407,640원 수납)
자 치 행 정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현재 수납처리
문 화 산 업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06	22 통합문화이용권 도비 집행잔액 등 (120,000원 수납)
관 광 산 업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5	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집행잔액 등
체 육 정 책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	22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도비 잔액 반납 등
문 화 유 산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6	(9,151,980원 수납)
사 회 복 지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34	(14,880,000원 수납)
여 성 가 족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48	(2,272,350원 수납)
노 인 복 지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	`23년 저소득 취약노인 난방비 지원 도비 잔액 반납 등 7,840,000원 수납
장 애 인 복 지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99	22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반납 등
건 강 증 진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50	(21,248,140원 수납)
기후환경정책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7	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추경) 도비 집행잔액 등
생 활 환 경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80	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지 역 정 책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22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집행잔액 반납(남원)
교 통 정 책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41	22년 택시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탄소바이오산업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22년도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집행잔액
농 업 정 책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9	22년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등
농 촌 활 력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8	22년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반납 등
교육협력추진단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	2022년 청소년어울림마당 도비집행 잔액 등
대 외 협 력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	22년 자원봉사활성화지원 국고보조사업 반납 등
해 양 항 만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5	22년 바다환경지킴이 도비 집행잔액
도로관리사업소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	현재 수납처리
일자리민생경제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1	22년 대학생 잡 멘토링 사업 집행잔액
문 화 산 업 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	현재 수납처리
문 화 유 산 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	현재 수납처리
장 애 인 복 지 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	21년 장애인단체 재활지원사업 부당집행액
교육협력추진단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6	현재 수납처리

□ 지난년도

부서명	회계과목	미수납액 (단위:백만원)	주요사유
계		142	
사 회 재 난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4	완주군 미반납
체 육 정 책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4	2021년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 등
문 화 유 산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	2020년 도지정 목조문화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여 성 가 족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7	2021년 시군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집행잔액 등
장 애 인 복 지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7	20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기후환경정책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3	20년 전라북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정산 등
교 통 정 책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6	2021년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주 택 건 축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감액처리)
농 촌 활 력 과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21년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진안군)
도로관리사업소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	'21년도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부안군)
자 치 행 정 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	2021년도 자치행정분야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해피드림연구소) 등
관 광 산 업 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9	21년 전북마이스산업 청년현장활동가육성사업 집행잔액 등
체 육 정 책 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4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반환

4 각종 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제고

□ 현 황

○ 전북특별자치도는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운영

○ 전북특별자치도 운용 관리기금은 2023년도말 기준 1조 42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05억원 증가

○ 기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한 법정기금과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조성된 자체기금 등 16종 조성·관리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기금수	조성액 (2023년도 말 기준)	비율 (%)	비고
계		**16**	**1,042,249**	**100**	
법정기금	의무 기금	5	61,815	6.0	
	재량 기금	5	921,418	88.4	
자체조성 기금		6	59,016	5.6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 기금관리기본법·같은법시행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같은법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같은법시행령

○ 재해구호법·같은법시행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관련 기금조례

□ 문제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으나, 기금별로 다양성이 상존

○ 대부분의 기금이 조성된 기금의 수입재원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기금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인 전입이 필요

-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자활기금 등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남북관계 경색 등 여러 요인으로 주요 사업추진이 어려워 일부 청년 대상 통일인식 개선 사업 등으로 추진

○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금 목표액 도달 시까지 일반회계 전입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만 하고 특별한 사업은 하지 않고 있음

□ 개선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의 혁신적인 운용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시 수입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실질적인 재원확보가 되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출계획을 수립

○ 기금운용관은 당초 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용기금 중에는 기금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기금, 조성 단계에 있는 기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집행이 어려운 기금 등 다양성이 상존하므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단계별 점검시스템(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운용 및 자금관리, 기금의 사후관리 단계 등)에 대한 도입 권고

<전북특별자치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2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23년말 조성액	비 고
			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011,799**	**30,450**	237,146	**206,696**	**1,042,249**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207,276	9,692	30,877	21,185	216,968	
	투자계정	-	5,491	12,334	6,843	5,491	
사회적경제기금		28	18	510	492	4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9,600	15,186	24,501	9,315	74,786	
	재정안정화계정	2,735	75	75	-	2,810	
지역개발기금		623,222	△11,566	139,472	151,038	611,656	
재난관리기금		18,491	8,275	15,023	6,748	26,766	
고향사랑기금		-	235	235	-	235	
체육진흥기금		10,121	18	198	180	10,139	
자활기금		4,999	△215	154	369	4,784	
재해구호기금		14,723	6,093	7,408	1,315	20,816	
성평등기금		3,378	8	76	68	3,386	
노인복지기금		2,131	△19	48	67	2,112	
식품진흥기금		9,521	△305	608	913	9,216	
환경보전기금		2,558	△2,158	1,227	3,385	400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균형발전기금		5,353	967	967	-	6,320	
농림수산발전기금		36,818	△1,490	3,256	4,746	35,328	
남북교류협력기금		10,845	145	177	32	10,990	

※ 관련부서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창업지원과, 금융사회적경제과, 예산과, 자연재난과, 자치행정과, 체육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 기후환경정책과, 지역정책과, 농산유통과, 대외협력과

5 도로 등 도자체 SOC예산 확대 필요

□ 현 황

○ SOC분야 예산투자 현황 비교(비슷한 도세)

('23년 예산 기준, 단위: 억원)

구분		평균 (6개도)	**전북 자치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2023년 최종예산		95,711	**91,343**	78,925	70,422	98,241	109,145	126,191
소 계		7,683	**5,596**	7,362	4,963	9,224	9,032	9,921
SOC	도로* 예산	2,493 (2.6%)	**1,374** (1.5%)	3,089 (3.9%)	1,717 (2.4%)	2,582 (2.6%)	3,771 (3.5%)	2,422 (1.9%)
	도로 외** 예산	5,191 (5.4%)	**4,222 (4.6%)**	4,273	3,246	6,642	5,261	7,499

* 국지도 건설, 지방도 확포장, 유지관리 등 / ** 상하수도·수질,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수자원

□ 문제점

○ SOC 사업 중 도로 분야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임

○ 전북특별자치도는 '22년 기준 지방도 포장율이 매우 저조(83.7%, 9개道 중 9위)하고,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1.59명)가 광역시도 평균(0.93명)보다 약 1.7배 더 높아 도로 안전 제고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나, '23년 SOC 도로 분야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타도 평균(2,493억원) 대비 55% 수준(1,374억원)에 불과하여 투자 여건이 열악한 실정임

○ 또한, 도내 낙후지역 등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SOC 도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권고사항

○ 교통 안전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지도 건설, 지방도 확포장, 도로 유지관리 등 **SOC 도로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도로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 관련부서 : 예산과, 도로공항철도과

건 의 사 항

1 도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방안 마련 건의

□ 현 황

○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제도*를 운영중임

* 국외연수 : 10개 시·군, 국내연수 : 4개 시·군

○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21년부터 장기근속공무원 국외연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 도 청원경찰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 운영기간('18~'19년, '22~'24년), 지원금액(1인 5백만원),
도 공무직 장기재직자 선진지견학 : 운영기간('19년, '22~'24년), 지원금액(1인 2.5백만원)

□ 건의사항

○ 전북자치도에서는 도 장기근속공무원들의 자긍심 고취, 시·군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장기간 공직에 헌신한 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예로운 공직 생활을 응원할 수 있는 '장기근속공무원 격려 방안' 마련을 건의함

※ 관련부서 : 총무과

수 범 사 례

1. 순세계 잉여금 발생 최소화

2. 세입세출외현금 효율적 관리로 역대 최고 이자수입 달성

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징수

4. 분만 및 출산취약지역 지원사업

5. 대형재난 통합 강화 119특수대응단 신설

1 순세계 잉여금 발생 최소화

□ 추진 배경

○ 최근 3년간('20~'22년) 우리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평균 3.6%인 3,337억원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 당해 연도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예측 등 순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전북자치도 3년간('20~'22년) 순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 현액(A)		8,556,057	9,334,308	9,593,546
순세계잉여금(B)		303,515	398,297	299,213
	일반회계	272,527	363,881	274,987
	기타특별회계	30,988	34,416	24,226
비율(B/A)		3.5%	4.3%	3.1%

□ 추진사항

○ (**정확한 세입추계**) 지방세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자문회의 구성・운영**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교수 등 세수추계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시군 추계액 교차검증 등을 통해 정확성 제고

○ (**집행잔액 최소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 관리 강화**

-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수 예산 반영**
- 추경 예산편성 시 **집행잔액 삭감 및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반영**

□ 추진성과

○ **'23년 순세계잉여금 1,068억원**으로 '22년 2,992억원 대비 **△1,924억원**

-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 1.1%**로 최근 3년 평균(3.6%) 보다 **△2.5%**

○ '22년 대비 **세입추계 오차* △256억원, 집행잔액** △1,349억원**

* '22년 345억원, '23년 89억원 / ** '22년 2,404억원, '23년 1,055억원

< 전북자치도 '23년 순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A)	순세계 잉여금 (D=B+C)	일반회계			기타특별 회계(C)	비율 (D/A)
		소계(B)	초과세입	집행잔액		
9,310,193	106,761	96,668	△8,865	105,533	10,093	1.1%

※ 관련부서 : 예산과

2 세입세출외현금 효율적 관리로 역대 최고 이자수입 달성

□ 추진개요

○ (추진배경) '22년 금고 신규 약정 금리 이율하락 등에 따른 적극적 자금운용 필요성 대두

* ('21년) 공금예금 이율 0.8% → ('22~'25년) 공금예금 이율 0.49%

○ (추진방향) 연월간 유휴자금을 예측하여 금고 예치시 가장 유리한 기간 및 규모로 설정

□ 추진사항

○ (자금 운용 방향 및 기준 설정)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 집행 최우선 추진

- 유휴자금은 경제상황·자금보유기간 등을 고려 최적의 금융상품*으로 운용

* 공금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정기예금(1·3·6·12개월)

○ (자금운용 업무 시스템 체계적·도전적 개선)

- (기존) 현재 잔액 기준으로 보수적 운용
- (개선) 가장 유리한 기간·규모로 정기예금 운용 가능 ⇨ 이자수입 극대화

□ 추진성과

○ 유휴자금 예측을 통한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대폭 증대

- (이자수입) '23. 12월말 1,262백만원*(전년 12월말 171백만원 대비 약 7.3배 증가)

* MMDA 1,108백만원/정기예금 154백만원

- (기 존) ①공공예금, ②수시입출금식예금 중심 운용
- (개 선) ①공공예금, ②수시입출금식예금, ③정기예금 자금 동시 운용 ⇨ <u>가장 유리한 방식의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u>

<'23~'24년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현황>

(단위 : 원)

MMDA				정기예금	
계	1,108,797,610			계	153,500,000
'23.1월	117,740,930	'23.7월	77,367,920	'23. 9.27.~'23.10.27.	83,500,000
'23.2월	84,342,770	'23.8월	97,900,430		
'23.3월	85,887,500	'23.9월	107,323,950	'23.10.27.~'23.11.27.	70,000,000
'23.4월	86,901,420	'23.10월	76,090,070		
'23.5월	92,748,450	'23.11월	94,024,760	'23.11.27.~'24.2.27.	
'23.6월	79,357,400	'23.12월	109,112,010		

※ 관련부서 : 회계과

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징수

□ 추진배경

○ (배경)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동산(귀금속, 명품 등)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단행

○ (추진방향)

- 체납자 명의 재산(부동산, 차량) 없이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선별
-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을 조사**하여 납부 여력 추정 및 압류 **회피 목적 거래**(증여, 양도 등) **집중 분석**
-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 콘도 등 각종 회원권 전수조사

□ 추진사항

○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거래내역 집중 조사, 은닉재산 추적**

- 최근 3년 부동산 매각 이력이 있는 고액체납자(금융자산 보유 추정) 및 전원주택 거주자 집중 조사·수색, 현금 및 귀금속 압류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40평대 아파트를 증여하고,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을 포착, 가택수색 현장 징수

○ **한국지역개발원에서 보유한 회원권 취득 정보**를 활용 체납자의 **회원권 보유 현황 추적**

□ 추진성과

○ '23년 이월체납액 395억원 징수(행안부 목표 384억원 대비 102.9% 달성)

※ 목표 달성율 : ('22년) 97.3% 전국 14위 → ('23년) 102.9%, 전국 3위

○ 고액 체납자 10명(전주 1, 군산 2, 익산 2, 남원 3, 김제 2) 가택수색 실시

- **현금 14백만원 현장 징수, 동산**(귀금속, 가방, 양주 등) **135점 압류**

가택 수색

귀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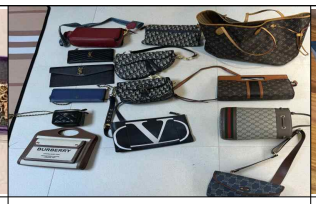
명품 가방

현금·양주 등

* 압류 물건은 공매처분 후 체납액에 충당

○ 체납자 보유 **회원권 압류 : 11건**(콘도 9, 골프 2), **7억원**

※ 관련부서 : 세정과

참고 1 2023년 시도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23. 12. 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3년 이월체납액 현황			'23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비 고 (순위)
	체납액 (A)	목표액 (B)	목표율 (B/A)	징수액 (C)	징수율 (C/A)	목표대비 징수율 (C/B)	
합 계	**37,383**	**13,894**	**37.2%**	**13,029**	**34.9%**	93.8%	
서 울	8,633	2,627	30.4%	2,523	29.2%	96.0%	12
부 산	1,885	707	37.5%	642	34.1%	90.8%	14
대 구	756	520	68.8%	471	62.3%	90.6%	15
인 천	3,160	1,239	39.2%	795	25.1%	64.2%	17
광 주	530	275	51.9%	276	52.1%	100.4%	5
대 전	774	372	48.0%	279	36.1%	75.0%	16
울 산	604	223	37.0%	215	35.7%	96.4%	11
세 종	279	115	41.3%	121	43.2%	105.2%	2
경 기	10,903	4,081	37.4%	3,957	36.3%	97.0%	10
강 원	800	362	45.3%	340	42.5%	93.9%	13
충 북	929	361	38.9%	362	39.0%	100.3%	6
충 남	1,513	598	39.5%	610	40.3%	102.0%	4
전 북	953	384	40.3%	395	41.4%	**102.9%**	3
전 남	799	367	45.9%	357	44.7%	97.3%	9
경 북	1,884	643	34.1%	643	34.1%	100.0%	7
경 남	2,304	783	34.0%	783	34.0%	100.0%	7
제 주	677	237	35.0%	260	38.4%	109.7%	1

참고 2 2023년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시군	체납자	주소	과세 년도	세목	체납액 (백만원)	실적
계	**5개**	**10명**				**603**	
1	전주	조○찬	전주시	2018 ~ 2020	재산세 등	179	현금 : 267만원 귀금속 : 70점 가방 : 14개
2	군산	오○○	군산시	2019 ~2020	지방소득세	89	배우자 납세담보
3		김○구	군산시	2021 ~ 2023	재산세 등	21	현금 : 10만원 귀금속 : 19점 양주 : 12병
4	익산	문OO	익산시	2020 ~2021	지방소득세	37	시효연장 5년
5		민○술	익산시	2015 ~ 2023	지방소득세 등	20	현금 : 300만원
6	남원	오○진(딸)	남원시	2022 ~ 2023	지방소득세 등	99	현금 : 239만원 귀금속: 11점 가방 : 1개 양주 2병
		오○식(본인)				19	
		김○람(자부)				27	
7	김제	배○○	김제시	2019 ~2021	지방소득세	98	가방 1, 팔찌 2, 목걸이 3
8		양○철	전주시	2015 ~ 2023	지방소득세 등	14	현금 : 600만원

4 분만 및 출산취약지역 지원사업

□ 추진배경

○ **(추진배경)** 도내 저출산 극복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분만·출산취약지 지원사업 필요

○ **(추진방향)**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산부인과가 없는 출산취약지 임산부에게 이송비 지원으로 안전한 출산 도모

○ (사업내용)

구분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200	▸ 대상기관 : 5개소 - (분만) 남원의료원, 고창병원, 김제우석병원, 정읍현대산부인과 / 각 5억원 - (외래) 진안군의료원/ 2억원 ▸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전문의, 간호인력) 지원
출산취약지 임산부 지원사업	758	▸ 대상기관 : 7개군 -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 사업대상 : 출산취약지 거주 임산부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산전진찰 및 분만이송비 지원 - 1인 최대 58만원(산전진찰 4만원 12회, 분만이송 10만원)

□ 추진사항

○ '23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추진실적 : 외래진료 61,739건/분만 120건

시군명	인건비 지원	외래진료	분만건수	비고
진안군	산부인과전문의 1명, 간호사 3명	2,466	-	외래산부인과
고창군	산부인과전문의 2명, 간호사 7명	7,000	8	외래·분만산부인과
남원시	산부인과전문의 2명, 간호사 7명	3,191	31	외래·분만산부인과
김제시	산부인과전문의 2명, 간호사 6명	47,515	56	외래·분만산부인과
정읍시	산부인과전문의 2명, 간호사 6명	1,567	25	외래·분만산부인과

○ '23년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 실적 : 8,884건(산전진찰 8,041건, 분만 843건)

□ 추진성과

○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의 산부인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분만환경 조성을 통한 **도내 저출산 극복에 기여**

○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임산부에게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 이송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도모**

※ 관련부서 : 보건의료과

5 대형재난 통합 강화 119특수대응단 신설

□ 추진배경

○ (추진배경) **광역단위 대형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 조직 및 **통합부서 필요**

※ **산업단지 특수구조대(완주)**, 화학구조대(군산), 119항공구조구급대(장수)

○ (추진방향) **효율적인** 도 단위 구조 대응조직 개편(단계별 설치)

※ 1단계(항공대 이전, 군산소방서 화학구조대 발대), **2단계(119특수대응단 신설)**

< 사업개요 >

- **(사업기간)** ’23. 5월 ~ 12월
- **(총사업비)** 5,194백만원(국비 18, 도비 5,175)
- **(추진방향)** **필수 특수장비 재배치**, 기존 항공대 청사 리모델링
- **(사업규모)** 구조장비(162종 2,403점), 차량(8종 9대), 지령시스템(11종), 운영물품(138종 501점) 구매 등

□ 추진사항

○ (조직)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	:	’23. 10.
○ (청사)	기존 항공대 건물 리모델링 완공	:	’23. 10.
○ (차량)	특수대응단 차량 신규 구매	:	’23. 12.
○ (장비)	필요 특수구조장비 구매 완료	:	’23. 12.
	필수 특수구조장비 이관(전관서→특·대·단)	:	’24. 1.
○ (인력)	항공대·군산화학대 이관, 구조대 재배치	:	’24. 1.

□ 추진성과

○ 구조장비 24종 75점 재배치를 통한 **필요 예산 절감**

○ 특수구조대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별도 추진을 통한 **특수사고 대응능력 강화**

□ 기대효과

○ 화재・화학・특수재난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

○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특수사고 유형에 맞는 전문대응** 가능

※ 관련부서 : 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참고1 특수대응단 신설 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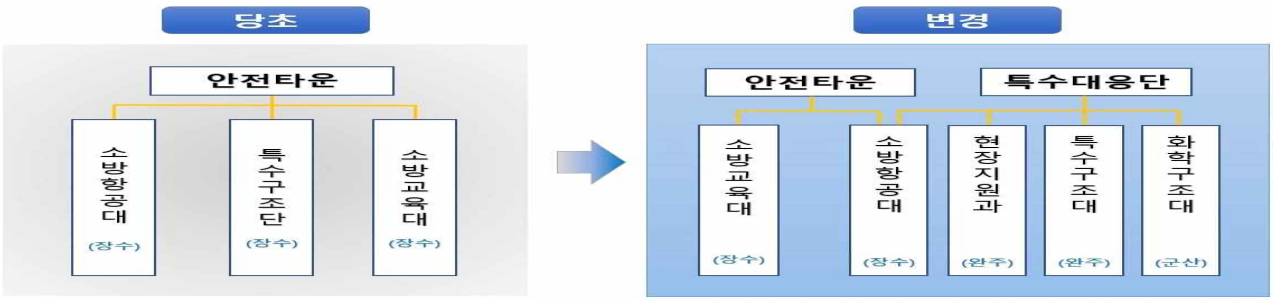

구 분	소방항공대	소방교육대	특수대응단
	'22. 12월 / 장수	'25. 8월 / 장수	'23. 12월 / 완주
건물규모	1,361㎡	4,080㎡	1,000㎡
주요용도	사무실·격납고	강의실·훈련탑·식당동	사무실·차고
변경사항	면적변경(1,000㎡→1,361㎡)	면적변경(3,000㎡→4,080㎡)	위치변경(장수→완주)

※ 소방교육기관 미설치 5개소(대전, 울산, 세종, 충북, 전북)

※ 특수대응단 미설치 3개소(세종, 제주, 전북)

○ 도내 산업단지 운영 현황

구 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계	전주	군산	익산	계	전주	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
단지수	**6**	1	3	2	**22**	5	4	1	3	4	1	2	1	1

※ 산업단지 28개소 중 19개소(68%)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 집중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구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허가업체	**356**	27	124	114	16	2	8	57	-	3	-	3	-	1	2

※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356개 중 322업체(90%)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 집중

○ 최근(5년간) 화학사고 발생현황

구분	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사고발생	**28**	3	8	2	-	1	5	5	1	-	1	-	-	1	1

※ 도내 발생 화학물질 사고 28건 중 18건(64%)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 집중됨

○ **119특수대응단 위치 변경시 접근성 분석결과**

변경 전 (장수군 소재)	변경 후 (완주군 소재)
장단점	단점: 장수에 119특수대응단 설치 시 50분 ~ 1시간 40분 장시간 소요	장점 : 완주에 특수대응단 설치시 도내 모든 시.군 40분 이내 현장도착 신속한 현장대응 가능 ※ 군산은 화학구조대 설치시 10분이내 현장도착 가능

참고2 특수대응단 주요 구조장비

구분	연번	장비명	형 상	보유 수량(점)	용 도
화재 진압 및 보호 장비	1	타격관창		2	전기차 화재 시 차량 하부에 밀폐된 배터리에 직접 꽂아 방수할 수 있는 관창
	2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2	전기차(고전압차량) 화재 시 전압차단, 밀폐, 차량 이동, 침수 등을 할 수 있는 대응 장비
	3	대원위치 추적기		1	RF 통신, 자이로스코프센서,GPS를 이용하여 인명구조 경보기의 상태 및 위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탐색 구조 장비	4	매몰자 영상탐지기		1	좁은 공간으로 탐지용 카메라를 투입하여 요구조자 탐색
	5	매몰자 음향탐지기		1	붕괴 사고 등 각종 구조현장에서 붕괴된 구조물 내의 요구조자 탐색
	6	매몰자 전파탐지기		1	매몰현장에서 전파를 이용하여 생존자 탐색
	7	수중 영상탐지기		2	수난사고 발생시 보트나 선박에서 수중 인명탐색

구분	연번	장비명	형 상	보유 수량(점)	용 도
화생방 대테러 장비	8	인체제독텐트		1	오염된 유해화학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비
	9	휴대용 가스분석기		1	저장탱크 기타 액체용기의 폭발성 위험물을 신속히 빼내지 않으면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여 다른용기에 옮겨 담아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장비임
	10	유해물질 분석기		3	폭발물 관련 사고시 폭발이 의심스러운 물체 등을 에워쌈으로서 폭발력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특수보호용 장비
	11	공기주입형 누출제어키트		2	저장탱크 기타 액체용기의 폭발성 위험물을 신속히 빼내지 않으면 인체나 환경에 유해하여 다른용기에 옮겨 담아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장비임
	12	방폭담요		2	폭발물 관련 사고시 폭발이 의심스러운 물체 등을 에워쌈으로서 폭발력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특수보호용 장비
산악 구조 장비	13	케이블도르래		2	수평이동이나 리프트 케이블에서 인명구조 작업시 사용되는 장비
수난 구조 장비	14	모터보트		1	수상 및 수중 구조현장 등 요구조자 접근이나 주변 탐색 및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

구분	연번	장비명	형 상	보유 수량(점)	용 도
	15	수중통신장비		1	수중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원이 수상에 있는 인원과 통화 시 사용
	16	수중스쿠터		2	깊은 물 사고 시 수중에서 구조대원의 신속한 이동 및 탐색을 보조하는 장비
구급 장비	17	자동심장압박기		1	구급대원 체력 소진 방지 및 규칙적인 심장 압박을 위한 장비
항공 장비	18	항공헬멧		3	항공기 탑승시 조종사와 구급대원 및 구조대원 간 통화를 하기 위한 장비
기타 장비	19	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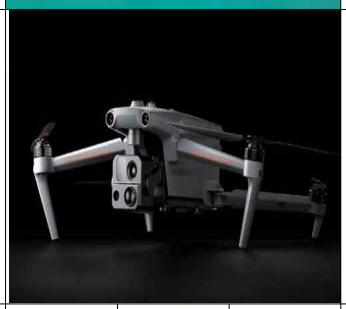	1	화재 및 구조 현장에서 현장 촬영 및 유해화학물질 탐지(옵션 추가 시) 등
	20	RIT장비세트		1	신속동료구조팀(RIT) 필수장비로서 다목적 용도(문개방, 장애물 파괴 등)의 경량 지렛대 및 확보장비

Ⅸ. 현장방문 결과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 일원 현장점검

□ 방문개요

○ 일　　시 : 2024. 5. 3.(금) 09:00 ~ 16:00
○ 방 문 지 : 붕어섬 생태공원(동부권발전사업), 119안전체험관 등
○ 참　　석 : 22명 정도(검사위원 15명, 자치행정국장 등 7명)
- (검사위원) 도의원3, 회계사1, 세무사2, 변호사1, 전직공무원8
- (전 북 도) 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 (임 실 군) 부군수, 옥정호힐링과장
○ 주요내용 : 주요 재정사업장(임실군) 사업추진 현황 등 현장점검 등

□ 주요 사업 추진현황

○ 위　　치 :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일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25년(11년간)
○ 총사업비 : 550억원(균이 265, 도비 130, 군비 155) * 동부권발전사업 지원
○ 사업내용 : 붕어섬 생태공원, 출렁다리, 요산공원 정비, 관광자원개발 등
- (붕어섬 생태공원) A= 7.6ha 경관조성, 안내소, 쉼터, 산책로(130억원)
- (출렁다리 조성) L= 420m, B=1.5m, H=83.5m(120억원)
- (요산공원 주변정비) 광장, 주차장 520면, 수변 산책로 L=21km(128억원)
- (관광자원개발) 운암교 경관광장, 운암리 캠핑장 40,000㎡, 자라섬 수변 데크 1.3km, 에코누리캠퍼스 6.5ha(172억원)

□ 결산검사 위원 당부사항

○ 좋은 관광자원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대책 필요
○ 조성 중인 ‘수변 데크로드 사업’ 신속추진으로 사업효과 증대 당부

【관련 사진】

붕어섬 생태공원	119안전체험관

X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2022회계연도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

1. 도금고 약정시 정기예금 금리상향 필요

①세정과 ②예산과 ③기업애로해소지원단

2.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설정 개선

①주택건축과 ②정책기획관

3.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업무 추진 미흡

①예산과

4.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①예산과 ②감염병관리과 ③토지정보과 ④일자리민생경제과 ⑤소통기획과 ⑥여성가족과 ⑦사회복지과 ⑧청년정책과(대도약청년과) ⑨어린이창의체험관 ⑩도립국악원 ⑪해양항만과 ⑫회계과 ⑬의회사무처 ⑭장애인복지과 ⑮산림환경연구소 ⑯자치경찰정책과

5.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전재정 운영 미흡

①사회복지과 ②관광산업과 ③문화유산과 ④도로공항철도과

6.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①예산과 ②기업애로해소지원단 ③금융사회적경제과 ④감사관 ⑤인권담당관 ⑥정책기획관 ⑦청년정책과 ⑧특별사법경찰과 ⑨문화산업과 ⑩관광산업과 ⑪체육정책과 ⑫사회복지과 ⑬건강증진과 ⑭생활환경과 ⑮물통합관리과 ⑯지역정책과 ⑰토지정보과 ⑱미래산업과 ⑲에너지수소산업과 ⑳탄소바이오산업과 ㉑농생명식품과 ㉒동물방역과 ㉓교육협력추진단 ㉔의회사무처 ㉕농업기술원 ㉖도립미술관

7. 지방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①자치행정과 ②문화산업과 ③관광산업과 ④문화유산과 ⑤장애인복지과 ⑥감염병관리과 ⑦물통합관리과 ⑧지역정책과 ⑨교통정책과 ⑩주택건축과 ⑪농촌활력과 ⑫수산정책과 ⑬농업기술원 ⑭농식품인력개발원 ⑮동물위생시험소 ⑯수산기술연구소

8. 성인지예산 사업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율 제고

①예산과 ②여성가족과 ③정책기획관 ④청년정책과 ⑤법무행정과 ⑥안전정책과 ⑦자치행정과 ⑧체육정책과 ⑨사회복지과 ⑩보건의료과 ⑪기후환경정책과 ⑫주택건축과 ⑬농산유통과 ⑭교육협력추진단 ⑮농식품인력개발원 ⑯금융사회적경제과 ⑰총무과 ⑱장애인복지과 ⑲대외협력과 ⑳119대응과(구조구급과)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세정과
제 목	1-1. 도금고 약정시 정기예금 금리 상향 필요
개선내용	○ 향후 도금고 이율 약정시 정기예금의 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 보다 높게 약정 필요 ○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비율이 높아 도금고 약정시 별도로 구분하여 정기예금이 더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21.6.21.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금고 지정 신청 공고(도보, 홈페이지) : ‘21.10.22. ○ 금고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 ’21.11.4.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은행 제안서 평가 후 금고 지정** : ’21.11.30. *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도의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전북은행 ○ 도금고 약정체결 : ‘21.12월 ※ 약정기간 : ‘22. 1. 1. ~ ‘25. 12. 31.(4년) □ **처리결과(계획)**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회의(‘24.3.24.) 시 금리 평가항목의 자치단체 재량 배점 확대를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 ○ 차후 도금고 선정(’25.12월) 시 정기예금 금리가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보다 높게 약정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여건 및 추이, (가칭)예금금리적정자문위원회(금융전문가, 교수, 공인회계사 등 구성) 등을 통해 약정금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예산과
제 목	1-2. 도금고 약정시 정기예금 금리 상향 필요
개선내용	○ 향후 도금고 이율 약정시 정기예금의 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 보다 높게 약정 필요 ○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비율이 높아 도금고 약정시 별도로 구분하여 정기예금이 더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예치금고 : 전북은행】 ***'21.12월 도금고 약정체결** - 약정기간 : 2022.01.01 ~ 2025.12.31 (4년간) - 약정금리 : 공금예금은 연 0.49%, 정기예금은 제1금고 **일반회계 금리* 적용** * 통합기금 1년 정기예금('24.4월) : 잔액기준 COFIX금리(3.78%)+0.22%=3.56% ※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창업/벤처,2.37%/고정금리)은 별도 약정 체결 * 지역개발기금 1년 정기예금('24.4월) : 잔액기준 COFIX금리(3.78%)+우대금리(0.11%)=3.89% ○ 통합기금의 예금금리는 도 금고 약정체결 시(세정과-13181(2021.12.14.)호) 일반회계 약정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은 각 기금별 사업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1년 정기예금으로 운용 중 □ **처리결과(계획)** ○ 금고 약정이 만료되는 '25.12월 금고 지정 시, 기금의 정기예금 우대금리 상향을 위해 세정과와 다각적 협의를 통해 약정 추진에 적극 대응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제 목	1-3. 도금고 약정시 정기예금 금리 상향 필요
개선내용	○ 향후 도금고 이율 약정시 정기예금의 금리를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 보다 높게 약정 필요 ○ 기금의 경우 여유자금 비율이 높아 도금고 약정시 별도로 구분하여 정기예금이 더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21.12.27.주간/서면) ○ 도-전북은행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협약 체결('21.12.29.) - 정기예금 예치금리(1.87%)와 중소기업 융자 대출금리(3.78%)로 협약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도-전북은행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변경 협약('23.12.22.) 에 의해 정기예금 금리와 중소기업 융자금리, 융자금 확보액 조정 - 정기예금 금리 : 1.87% → 2.37%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리 : 3.78% → 5.00% - 융자금 확보액 : 도 예치자금의 2배 → 2.5배 【예치금고 : 전북은행】 - 협약기간 : 2024.01.01 ~ 2025.12.31 (2년간) - 예치금리 : 2.37% - 대출금리 : 5.00% - 융자한도 : 250%(5,230억원) * 협약 당시 예치금 : 2,092억원 * COFIX 기준금리가 협약일 금리보다 0.5% 이상 변동 발생시 금리 재조정 가능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주택건축과
제 목	2-1.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설정 개선
개선내용	○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을 적정하게 산출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내로 계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서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고 동 조례 제9조에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1% 이내로 계상하여야 하나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총액의 70.4%로 과다하게 계상하였음 * (예산총액) 8,039,153천원, (예비비) 5,659,153천원 □ 처리결과(계획) ○ 2023년 결산추경 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를 1%이내로 조정 완료하였으며 2024년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였음 ※ '24년 예비비 26,000천원(예산총액 대비 0.9%)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정책기획관</td></tr>
<tr><td>제 목</td><td>2-2. 특별회계 예비비 과다설정 개선</td></tr>
<tr><td>개선내용</td><td>○ 동부권 특별회계는 동부권 6개 시군에 정책의 지방자치단체보조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는바
○ 특별회계의 특성상 예비비가 적절치 않으며
○ 사업연도 중 이자수입 등 잉여금도 예비비로 계상하지 않도록 개선
【동부권특별회계 예비비 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구 분</th><th>예산현액</th><th>지출액</th><th>예비비</th><th>예비비 비율</th></tr>
<tr><td>동부권특별회계</td><td>36,683,368</td><td>36,000,000</td><td>683,368</td><td>1.8%</td></tr>
</table></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2항에 의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 ’22년 예산총액의 1.8%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3년 결산 추경에 예비비를 삭감하였고 예비비 693,377,620원*(‘23.12.26.현재)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완료(‘23.12.29.)하였음
○ ’24년 동부권특별회계의 예비비는 미편성하였음
* 순세계잉여금(683,370,560원)+공공예금이자수입(10,007,060원)</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예산과</td></tr>
<tr><td>제 목</td><td>3. 2022년도 예산편성업무 추진 미흡</td></tr>
<tr><td>개선내용</td><td>○ 추경예산 편성 시 본예산 대비 89건 627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고, 인건비의 경우 2회 추경 시 40억원을 삭감하는 등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에서는 각종 사업 예산 요구 및 심사 시 사업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년 삭감되는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개선
【추경별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 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추경별</th><th>건수</th><th>당초예산</th><th>삭감액</th></tr>
<tr><td>계</td><td>89</td><td>86,574,195</td><td>△62,786,198</td></tr>
<tr><td>1회추경('22. 8. 1.)</td><td>26</td><td>20,133,052</td><td>△16,362,688</td></tr>
<tr><td>2회추경('22.12.13.)</td><td>63</td><td>66,441,133</td><td>△46,423,510</td></tr>
</table>
【인건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황】
(단위:천원)
<table>
<tr><th rowspan="2">본예산액</th><th colspan="2">1회추경</th><th colspan="2">2회추경(결산추경)</th></tr>
<tr><th>예산액</th><th>증감</th><th>예산액</th><th>증감</th></tr>
<tr><td>462,622,544</td><td>465,199,524</td><td>증2,577,980</td><td>461,111,344</td><td>△4,088,180</td></tr>
</table></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집행 부진 및 지연사업의 경우 추경 삭감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등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내시 변경 및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취소·변경 등 추경을 통해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하였음.
○ (인건비 삭감) 인사이동 및 휴직 등으로 인하여 보수 및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예산편성)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예산심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예산 미반영* 등 적정 예산 편성 추진
- (사업부서) 사업계획 수립 철저 및 사전절차 조기 이행으로 사업 적기 추진
* 집행 지연 대형 공사 미반영, 상·하반기 시기 조정 가능 본예산, 추경 분할 편성 등
○ (인건비) '24년 예산편성 시 실집행액을 고려하여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
* 현원('23년 8월) : 5,819명(공무직 별도)</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예산과
제 목	4-1.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2**	**2,971,003**	**24**	**24,999,428**
전용	5	121,784	4	84,300
변경사용	27	2,849,219	20	24,915,128

○ ‘21년 대비 ’22년 전용 및 예산변경 사용 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총 금액은 증가하였음

○ 이는 사업 계획 및 통계목 등 변경이 아닌 부처 내역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도 세부사업을 단순 신설 및 분리 한 5건 22,672,151천원이 예산 변경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임

* e나라도움 시스템 등 국고보조사업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 1:1 맵핑 필요

※ 부처 내역사업 분리에 따른 변경사용 내역 (단위: 천원)

통계목	변경사용 전 세부사업명	변경사용 후 세부사업명	금 액
계		**5건**	**22,672,15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139,500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10,000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1,226,340
자체단체경상보조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21,038,953
사회복지사업보조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배치	257,358

□ **처리결과(계획)**

○ 원칙적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고 전용 및 변경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 및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인하여 전용 및 예산 변경을 최소화하여 운영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제 목	**4-2.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코로나19 방역대책】【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2022년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 미반영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전용 * 병장 월보수액 (2021년) 608,500원 → (2022년) 676,100원 ○ 예산 전용으로 4월 소집해제 대상 사회복무요원의 4월분 급여에 3월 미지급분 포함하여 지급 □ **처리결과(계획)**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주의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토지정보과
제 목	**4-3.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사업】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전주시에서 사업진행 하여 당초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주시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지방비 미확보 등에 따라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여 도에서 직접 사업진행을 추진하게 되었음 ① 최종 공모선정 및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지(행안부) : ´22. 5. 10. ② 도 추경(´22. 7. 28) 후 예산교부(도→전주시) : ´22. 8. 3. ③ 전주시 사업포기 고지(전주시→도) : ´22. 8. 31. ④ 지방비 미확보 등 사업추진 관련 해결방안 실무 협의(행안부) : ´22. 9월초 ⑤ 사업내용, 범위 재조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행안부) : ´22. 9. 22. ⑥ 예산 전용(자치단체자본보조→연구용역비) : ´22. 9. 29. **□ 처리결과(계획)** ○ 예산의 목적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였음 - 조달청 용역계약 의뢰 및 계약 공고 : ‘23. 1. ~ 2. - 업체 계약 및 착수 : ’23. 3.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감독 : ‘23. 3. ~ 6. - 사업추진결과 납품 검수 및 최종 완료 : ’23. 6.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일자리민생경제과
제 목	**4-4.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22.4월 의원발의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에 따라 신규 설치(‘23. 1. 업무개시)하는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일부를 기타자본이전으로 전용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차후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통해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소통기획과
제 목	**4-5.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최소화** 【온라인매체 및 뉴미디어 도정홍보】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민선8기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국 대학생 대상 영상공모전을 추진 ○ 공모전 참여 작품 중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 및 뉴미디어 도정홍보 예산 중 사무관리비 일부(9,000천원)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향후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계획을 통해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용을 최소화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여성가족과</td></tr>
<tr><td>제 목</td><td>4-6.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td></tr>
<tr><td>개선내용</td><td>○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단위: 천원)
<table>
<tr><th rowspan="2">세부사업명</th><th rowspan="2">통계목</th><th rowspan="2">예산액</th><th colspan="2">변경사용금액</th></tr>
<tr><th>감액</th><th>증액</th></tr>
<tr><td>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td><td>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td><td>950,700</td><td>139,500</td><td>-</td></tr>
<tr><td>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td><td>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td><td>-</td><td>-</td><td>139,500</td></tr>
<tr><td>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td><td>사회복지사업보조</td><td>211,702</td><td>10,000</td><td>-</td></tr>
<tr><td>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td><td>사회복지사업보조</td><td>-</td><td>-</td><td>10,000</td></tr>
<tr><td>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td><td>사회복지사업보조</td><td>458,128</td><td>257,358</td><td>-</td></tr>
<tr><td>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전담인력 배치</td><td>사회복지사업보조</td><td>-</td><td>-</td><td>257,358</td></tr>
</table>
○ 사업계획 및 통계목 등 변경이 아닌 부처 내역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도 세부사업을 단순 신설 및 분리 한 3건이 예산 변경으로 처리되었음
* e나라도움 시스템 등 국고보조사업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대 자치단체 세부사업 1:1 맵핑 필요

□ 처리결과(계획)

○ 원칙적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조정하고 필요성 및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전용 및 예산 변경 요구를 최소화하겠음

○ 2023회계연도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을 하지 않았음</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사회복지과
제 목	**4-7.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과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사용하도록 보건복지지부의 지침 하달*에 따라 예산변경을 하였음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4575(2021.12.13.) □ **처리결과(계획)**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주의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청년정책과(대도약청년과)
제 목	**4-8.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당초 상용 S/W 등을 구입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도민증 신청·발급 등에 있어 시군 참여로 제도 시행의 확장성 제고를 위한 관리자 기능 확대(도 →도,시군) 부여 등 시스템 개발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50백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예산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건전 재정운영 및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하여, 예산수립 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어린이창의체험관
제 목	**4-9.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놀이중심의 체험시설 운영】【부서 기본경비】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미비로 인건비(복리후생비)가 부족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특정업무경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제도는 제한적으로 운영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도립국악원
제 목	**4-10.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공연기획실 운영】【창극단 운영】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본 사업은 예술단별 정기·기획공연 등 특색있는 공연으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 당초 창극단 운영예산 1억 7천만원 중 정기공연 예산으로 1억 1천만원을 배정하였으나, ○ 2022년 국악원 노조 단체협약으로 정기공연 수당지급 체결 및 무대·조명·음향 설치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증가로 창극단 정기공연 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연기획실 운영 예산 1천만원을 창극단 운영 예산으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수요를 예측하는 등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해양항만과
제 목	**4-11.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어장정화선 대체건조】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위험성 평가 반영 등 선박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공사비이외의 불가피한 감리비 및 부대비 지급을 위해 시설비 80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주의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회계과</td></tr>
<tr><td>제 목</td><td>4-12.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td></tr>
<tr><td>개선내용</td><td>○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단위:천원)
<table>
<tr><td rowspan="2">부서명</td><td rowspan="2">세부사업명</td><td rowspan="2">통계목</td><td rowspan="2">예산액</td><td colspan="2">변경사용금액</td><td rowspan="2">비 고</td></tr>
<tr><td>감액</td><td>증액</td></tr>
<tr><td rowspan="2">회 계 과</td><td>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td><td>공 공 운 영 비</td><td>486,385</td><td>6,600</td><td></td><td rowspan="2"></td></tr>
<tr><td>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td><td>사 무 관 리 비</td><td>90,600</td><td></td><td>6,600</td></tr>
</table>
○ 추경예산 편성 전 차량 내구연한 경과, 주행거리 초과 등 노후차량(전용차량 1대)을 대체할 차량의 임차계약을 위해 공공운영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임차비를 집행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예산집행 시 기존 예산의 목적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의회사무처</td></tr>
<tr><td>제 목</td><td>4-13.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td></tr>
<tr><td>개선내용</td><td>○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단위:천원)
<table>
<tr><th rowspan="2">통계목</th><th rowspan="2">예산액</th><th colspan="2">요구액</th><th rowspan="2">변경후
예산액</th></tr>
<tr><th>증</th><th>감</th></tr>
<tr><td>의원국외여비</td><td>167,213</td><td>-</td><td>19,350</td><td>147,863</td></tr>
<tr><td>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td><td>15,850</td><td>19,350</td><td>-</td><td>35,200</td></tr>
</table>
○ 의원 민간위탁교육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국외 정책연수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의원국외여비 예산 일부를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본래 목적에 따라 편성한 예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예산 변경 사용을 최소화하겠음</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제 목	**4-14.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단위 : 백만원) ○ '21년 대비 인건비 및 자재비가 1.5배 인상되고, 전기·통신·소방 시설 신설 등으로 기반 공사 사업량이 증가하여 사업비 감액이 불가피하여 사업량 축소 * 사업량 변경(건물 6동→2동) ○ 건축공사 및 전기공사, 소방공사 감리인 선정으로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 58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음 * 준다중이용 건축물(노유자시설) 건축공사 상주감리 필요, 연면적 1,000㎡대상 건축물로 소방감리 필요 □ **처리결과(계획)** ○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22년 이월되어 '24.4월 종료된 사업으로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를 기하겠음

통계목		당 초		변 경		증 감	
		금 액	내 용	금 액	내 용	금액	사유
시설비	공사비	2,500	탈시설종합지원센터 1동, 자립주택 4동, 재활치료센터 1동 (2,085㎡)	2,442	탈시설종합지원센터 1동, 재활치료센터 1동 (1,378.49㎡)	△58	설계용역결과 총공사비 44억으로 추가예산 확보 어려워 사업량 축소
감리비	전기	45	전 기 공 사	31	전기	△14	준다중이용 시설로 상주 감리 필요
	건축			64	건축	64	
	소방			6	소방	8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산림환경연구소
제 목	**4-15.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사방시설 조성】【부서 인력운영비】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사방시설 조성) 우기철 이전 사방사업 완료를 통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23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전설계를 추진하고자 예산 부족분 변경 ○ (부서 인력운영비) 22년 2회추경 편성 당시 일반직 현원(휴직자 제외) 34명이었으나, 11.3일자 인사발령 시 녹지6급 1명 추가 배치로 현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을 예산변경하여 지급 * 일반직(녹지6급) 월보수액 (2개월분) 8,641,300원 □ **처리결과(계획)** ○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주의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자치경찰정책과
제 목	**4-16. 세출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최소화**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개선내용	○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가급적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앞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용 및 변경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유실물 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 유실물 접수결과 습득물 감정, 보관 및 폐기 등 처리에 필요한 비용인 습득물 처리 소요비용(사무관리비)이 과다발생하여 유실물 반환을 위한 반송비용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2,713천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향후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변경사용을 최소화하여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2023회계연도는 예산의 변경 없이 목적에 맞게 사용완료하였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사회복지과
제 목	5-1. 예산전액 불용처리로 건전재정 운영 미흡 【의사상자 지원】
개선내용	○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바람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의사상자 지원은 타 사업 예산과 달리 의사자 및 의상자의 의로운 행위를 예우하기 위한 특별위로금 차원의 예산으로 ○ 2022년 대상자(의사자 및 의상자) 미발생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인정 결과 통보서를 받은 이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관광산업과
제 목	**5-2.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전 재정 운영 소홀** 【경천자연공감 산수인마을조성】【부귀산 별빛고원조성】
개선내용	○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바람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경천자연공간 산수인마을 조성) 당초 사업대상지인 경천저수지 주변에 대한 농림부의 농업보호구역 해제 불가로 사업계획 변경*을 문체부와 협의(‘20.12.~’21.12.)하였으나,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조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22년으로 명시이월하였고 이후 문체부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국비(10억)를 미교부함에 따라 불용 처리됨 * 낚시 체험교육시설 → 수상데크 중심의 둘레길 조성 ○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당초 사업대상지인 부귀상 정상은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으로 산림청 국유림 협의 불가로 사업계획 변경*을 문체부와 협의하였으나 당초 사업목적인 천체관측 테마의 개발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2년 국비(4억)를 미교부함에 따라 불용 처리됨 * 천체관측 시설 → 자연관찰 체험 시설 □ **처리결과(계획)** ○ 향후 사전행정절차(토지매입, 관계기관 협의 등) 및 국비미송금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문화유산과
제 목	**5-3.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전 재정 운용 소홀**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부안백산성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건립】
개선 내용	○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바람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사업부지인 고창 무장기포지가 '22년 5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 구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지표조사, 표본조사, 발굴조사)를 이행할 사유가 발생하여 이월사업비 국비(5억)를 반납함 ○ **(부안 백산성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22.5월)하였으나, 중앙투자심사 미이행, 사업부지 미확정으로 국비(5억)가 미교부되어 불용처리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사업부지인 무장기포지에 대해 종합정비계획 수립('23.12월)하고 '24년 예산으로 실시설계비 5억원 확보 - 설계공모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24. 9-10월 추진 예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부안 백산성지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사업)** 문체부 기본계획수립 타당성조사 용역 승인에 따라 '24년 실시설계 추진을 위한 예산(2.5억) 확보 - 설계공모를 '24. 11~12월까지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도로공항철도과
제 목	5-4.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건전 재정 운용 소홀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개선내용	○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조정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바람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부과·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시·군에게 징수한 금액의 30%를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 ○ 교부금 산정 시 시·군에서 지방도 도로점용료 징수자료(당해연도 10월경)를 받아 교부하였으나, 결산금액(다음연도 6월)과 차이가 발생하여 결산 결과를 토대로 교부하기 위하여 '22년도 예산을 불용처리 ※ 차이발생 사유 : 시·군에서 자료 제출 이후(10~12월) 추가 점용료와 반환금(공사 준공으로 점용불필요 등) 발생 □ **처리결과(계획)** ○ 향후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예산과
제 목	6-1.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전문가(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설팅을 통해 성과보고서 실적 검증(객관성 확보) 및 불합리한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체계적인 예산성과 관리를 추진하였으나, 성과보고서 작성 시 일부 작성사항이 누락되었음 * **('23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개선)** - **(본예산)** '22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대비 **109개** 성과지표 변경 ※ 목표치 상향(24), 목표치 하향(4), 지표 조정(47), 신설 지표(30), 지표 삭제(4) - **(추경2차)** 본예산 성과계획서 대비 **74개** 성과지표 변경 ※ 지표변경(26), 측정산식개선(4), 지표신설(7), 지표삭제(2), 목표치상향(23), 목표치하향(10), 기타수정(2) □ 처리계획(결과) ○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을 대비하여 전 부서 담당자 워크숍('23. 8월)을 실시하여 예산의 성과관리 제도 설명 및 e호조 시스템 입력 매뉴얼 안내 - (일시/장소) '23.8.1./중회의실 (참여인원) 81명(부서 예산서무 등) ○ '24년 본예산 성과계획서 작성 시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지표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지표설정 적정성 검토 및 개선 추진 * **('24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개선)** - '23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대비 **103개** 성과지표 변경 ※ 목표치 상향(28), 목표치 하향(3), 신규(10), 변경(46), 조정(11), 삭제(5) → 2년 연속('21~'22) 초과달성 지표(38) 전부개선 완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제 목	**6-2.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전라북도 선도기업 지원】【도지사인증상품 지원기업 매출액】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선도기업의 마케팅 지원사업 수요 증가 및 기업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현장 방문 등으로 인한 목표치 초과달성 ○ 업무 적극추진 및 지정기업과 협회의 적극 협조에 따라 매출액 목표치 초과달성 □ **처리결과(계획)** ○ 전년도 실적, 추진상황 등을 반영하여 '23년 성과계획의 성과목표치를 상향설정하고 성과목표를 변경하였음 **(전라북도 선도기업 지원)** - (당초) 전라북도 선도기업 지원(200건) → (개선) 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지원(400건) **(도지사인증상품 지원기업 매출액)** - 매출액 목표치 증액(3800억 → 5,000억) ※ '23년 지표실적: (목표)5,000억원 / (매출실적)6,337억원(달성도126%)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금융사회적경제과</td></tr>
<tr><td>제 목</td><td>6-3.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금융혁신 벤처기업 육성】【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일자리 창출(유지) 및 정규직화】</td></tr>
<tr><td>개선내용</td><td>○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 (금융혁신 벤처기업 육성)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지원 확대 필요성 증가로 지원기업 수 확대
<table>
<tr><th>당 초</th><th></th><th>변 경</th></tr>
<tr><td>• (목적) 소수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의 질적 강화</td><td>⇒</td><td>• (목적) 도내 핀테크 스타트업 증가를 위한 지원기업 수 확대</td></tr>
</table>
○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화) ‘22년 기채용 인원 중 중도퇴사자 다수 발생으로 인해 하반기 대체 채용 확대

□ 처리결과(계획)
○ 전년도 실적, 추진상황 등을 반영하여 ‘23년 성과계획의 성과목표치를 상향설정하고 성과목표를 변경하였음
(금융혁신 벤처기업 육성) ’23년 목표 상향(5개사→6개사)으로 성과지표 현실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화) 일자리 창출 인원은 ‘22년 대비 ’23년 목표 상향(181명→240명)하였으나, 정규직 전환은 기업 경영 상황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관계로 현상유지
<<성과목표 현황>>
<table>
<tr><th>구 분</th><th>2022년 목표치</th><th>2023년 목표치</th></tr>
<tr><td>일자리창출</td><td>181명</td><td>240명</td></tr>
<tr><td>정규직화</td><td>20명</td><td>20명</td></tr>
</table></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감사위원회(감사관)
제 목	**6-4.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컨설팅 공직감찰과 청탁금지법 신고사무 처리 등 민원 조사를 통한 시정개선사항 발굴, 조치】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단위): 컨설팅 공직감찰과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 등 민원 조사를 통한 시정·개선사항 발굴·조치(%) 측정산식(방법): (자체조사 해결건수/고충·복합민원 접수건수)*100% 목표대비 달성률 / '21년 달성성과 / '22년 달성성과 목표: 해결률 65% / 해결률 65% 실적: 해결률 74% / 해결률 90% 달성률(%): 114% / 138% ○ 아래 [표]와 같이 2020년도 자체조사 해결률은 67%로 2022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시('21. 9월)에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목표를 65%로 설정하였으나 <최근 6년간 민원처리 건수 및 자체조사 해결률> 구분 / 접수건수(A) / 처리건수: 자체처리(B), 이송(C), 진행중(D), 기타(취하 등)(E) / 해결률(B÷A ×100%) 계: 1,452 / 1,135 / 180 / 70 / 67 / 78.1% 2018년: 251 / 176 / 49 / - / 26 / 70% 2019년: 218 / 148 / 51 / 13 / 5 / 68% 2020년: 183 / 123 / 33 / 15 / 12 / 67% 2021년: 202 / 150 / 29 / 10 / 13 / 74% 2022년: 225 / 202 / 7 / 15 / 1 / 90% 2023년: 374 / 336 / 11 / 17 / 10 / 89.8% ○ 2022년에는 도 사업부서 및 시·군 업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의 경우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사·처리해달라는 민원인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도 사업부서 및 시·군에 민원 이송(이첩)을 최소화하여 목표(65%) 대비 실적(90%)이 138% 초과 달성함 ○ 다만, 이는 위 [표]와 같이 이송(이첩) 건수가 '18년 49건에서 '22년 7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도민의 권익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해 도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직접 처리한 결과임 □ **처리결과(계획)**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요구에 따라 2023.9월 2024년도 성과목표 설정 시 민원처리 자체조사 해결율을 65%에서 75%*로 상향 조정 *** '18년~'22년 민원처리 자체조사 해결율(74%)을 고려하여 설정** ○ 앞으로도 도민의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이송(이첩)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를 할 계획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인권담당관</td></tr>
<tr><td>제 목</td><td>6-5.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인권정책 및 인권증진 기반 조성】</td></tr>
<tr><td>개선내용</td><td>○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 인권정책 및 침해사안 권리구제를 위한 심의·자문사항 증가, 시군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로 인권위원회 등 회의개최 수 목표대비 초과 실적 달성

□ 처리결과(계획)
○ 성과계획 수립 시 초과달성 지표에 대해 전년도 실적, 금년도 추진 상황 등을 면밀히 원인분석하여 ‘24년 목표치를 인권위원회 운영 횟수에서 최근 3년간 운영율로 수정하였음(횟수->비율)

※ 연도별 성과지표 현황(인권위원회 운영 횟수)
<table>
<tr><td>구분</td><td>2021년
(운영 횟수)</td><td>2022년
(운영 횟수)</td><td>2023년
(운영 횟수)</td><td>2024년
(운영율)</td><td>2025년
(운영율)</td></tr>
<tr><td>목표치</td><td>11</td><td>11</td><td>11</td><td>100%</td><td>100%</td></tr>
<tr><td>실적</td><td>14</td><td>16</td><td>11</td><td>14(예시)
->103%</td><td></td></tr>
</table>
*측정산식 = 전년도 운영횟수/최근 3년간 평균 운영횟수*100
(예시) 2024년 실적: 102%(14/13.6*100)</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정책기획관</td></tr>
<tr><td>제 목</td><td>6-6.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대형 국책사업 발굴 건수】【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선정 건수】</td></tr>
<tr><td>개선내용</td><td>○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성과지표(단위)</th><th>목표</th><th>목표대비 달성률</th><th>'22년 달성성과</th></tr>
<tr><td rowspan="3">대형국책사업 발굴 건수</td><td rowspan="3">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책사업 발굴 건수</td><td>목표</td><td>15</td></tr>
<tr><td>실적</td><td>25</td></tr>
<tr><td>달성률(%)</td><td>166%</td></tr>
<tr><td rowspan="3">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선정 건수</td><td rowspan="3">국가균형발전공모 사업 선정 건수</td><td>목표</td><td>2</td></tr>
<tr><td>실적</td><td>9</td></tr>
<tr><td>달성률(%)</td><td>450%</td></tr>
</table>
○ (대형국책사업 발굴 건수) 지표의 목표설정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국책사업 발굴 적극 추진으로 목표 초과 달성하였음
○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선정 건수) 국가균형발전공모 관련 시군 신청 독려 및 서류 사전 검토 등 적극 대응을 통한 사업 선정 초과 달성

□ 처리결과(계획)
○ 작년 달성률 대비 상향 조정하여 목표치 현실화 및 상향 추진
(대형국책사업 발굴 건수) 15건('23년) → 24건('24년)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선정 건수) 2건('22) -> 10건('23) -> 10건('24)</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청년정책과
제 목	**6-7.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인구정책 종합정책 내실화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건수의 목표를 2건으로 설정하였으나, 공무원의 적극행정 인식도 제고되어 당해 연도에 우수사례 발굴 건수가 9건으로 초과달성되었음 □ **처리결과(계획)** ○ 작년 달성률 대비 상향 조정하여 목표치 현실화 및 상향 추진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목표치를 당초 ‘2건’에서 ‘6건’으로 상향 설정하였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특별사법경찰과
제 목	**6-8-①.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민생 6대 분야 점검】【코로나19 대응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연도별 단속 및 적발 현황>

연도별	단속건수	적발건수	적발률(%)	비고
2017	981	104	10.6	
2018	807	84	10.4	
2019	1,083	103	9.5	
2020	1,719	76	4.4	
2021	2,096	179	8.5	
2022	2,037	84	4.1	
2023	878	81	9.2	

○ ’20~’22년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염취약시설 집중단속, 홍보계도 활동 적극 추진으로 단속건수 증가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코로나19 시기 제외, 연도별 단속 건수 비교·분석 반영하여 ’24년 목표 설정

- 23년 코로나19 방역단속 해제 후, ’17~’19년 단속 및 적발건수 유사 수준임
- 민선 8기 정책 기조에 따라 단속·적발보다 사전 예방 활동 강화

▪ 단속 사전 언론홍보, 시군 및 관련협회 등 단속예고 공문 발송, 특사경 직무교육, 간담회 실시 등

<연도별 성과지표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목표	710건	1,950건	**842건**
실적	2,037건	878건	-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특별사법경찰과</td></tr>
<tr><td>제 목</td><td>6-8-②.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경제수사 민생 3대 분야 점검 및 추진 건수(개소)】</td></tr>
<tr><td>개선내용</td><td>○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 <업무 적극추진에 의한 초과달성>
- 전세사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분야 단속 적극 추진
-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하여 공간정보(드론영상) 활용 산림훼손 단속 추진

□ 처리계획(결과)
○ ‘23년 성과 초과달성 및 추진상황 반영하여 ‘24년 목표치 상향 설정 및 계획에 따른 성과 달성 예정

<연도별 성과지표 현황>
<table><tr><th>구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tr><td>목표</td><td>570건</td><td>610건</td><td>610건</td></tr><tr><td>실적</td><td>609건</td><td>899건</td><td>-</td></tr></table></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문화산업과
제 목	**6-9.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문화기반시설 이용자수】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본 사업은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학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이용자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음 ○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과 관련하여 문화시설 이용제약이 많고 및 향후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움에 따라 2022년 목표를 2021년과 동일한 3,200천명으로 설정하였으나 - 코로나 정점이 지나 전면적 방역완화조치로 일상회복 가능 및 시설 이용제약(휴관 등)이 감소함에 따라 문화기반시설 이용자가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음 * '22년 목표 : 3,200천명 / 실적 : 6,371천명(199%) * '21년 목표 : 3,200천명 / 실적 : 3,760천명(117%) □ **처리결과(계획)** ○ '22년 목표·실적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23년 목표치 상향 설정 * ('22년) 목표치 3,200명 → ('23년) 목표치 6,400천명 ※ '23년 실적 : 7,999천명(125%)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관광산업과
제 목	**6-10.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전북투어패스 전시군 확대(매)】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23년 성과 목표 판매량은 110,000매 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내외 방문객 증가, 투어패스 운영 활성화 등으로 23년 136,272매를 판매하여 목표치를 123% 초과달성하였음 (가맹점) 전북투어패스 가맹점 추가확보 및 교육 지속 실시 - 자유이용시설 76개, 패키지시설 19개, 특별할인가맹점 281개 (상품운영) 관광편의 극대화를 위한 단독상품 및 연계상품 등 개발 - 단독상품(5개), 체험연계(6개), 기타(5개) 상품 발굴 (홍보) 투어패스 홍보영상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 SNS운영(151회), 키워드광고(131,550,971회), 홍보영상 제작(2건), 현장홍보(8회) 등 □ **처리결과(계획)** ○ 다양한 수요 분석과 진단을 통한 '23년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설정 ('23년) 투어패스 판매량 110,000매 → ('24년) 투어패스 판매량 120,000매 ※ '24년 목표인 투어패스 판매량(매) 120,000매는 축소된 예산(600백만원, '23년 대비 641백만원 감액) 대비 공격적인 목표치라고 볼 수 있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체육정책과
제 목	**6-11.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2023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 홍보】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본 사업은 일반국민과 체육인을 대상으로 우리 대회에 대한 인지 여부, 인지경로 등을 설문조사하여 홍보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으로 대회의 인지도 조사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음 ○ ‘21년도 목표치 20% 대비, ‘22년도 지표설정 목표를 36%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대회 붐업을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로 초과 달성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2023아태마스터스 대회는 2023년 5월 종료되었으며, 추후 성과 목표설정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사회복지과
제 목	**6-12. 예산의 성과관리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저소득 소외계층 나눔문화 확산 등 3개 지표】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저소득 소외계층 나눔문화 확산)** 유관기관 적극협조로 기부식품 모금액이 증가하여 성과목표 초과달성 **(자활근로자사업 참여자수)** 자활사업 참여자 목표치를 자활사업 유형 중 업그레이드형(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평균 수치로 산정하였으나, 결과 입력 시 기타유형 및 고용노동부 실적까지 포함하는 입력오류로 목표치 초과 달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 강화)** 사업의 목표치를 최초 수요조사에 따라 산정하였으나 공보육정책 중점 추진으로 초과 달성 □ **처리결과(계획)** ○ 최근 3년간 목표·실적 현황을 분석하여 '23년 목표치 상향 설정 및 성과지표 변경 **(저소득 소외계층 나눔문화 확산)** 기부식품 모금 총액 목표치를 최근 3년간 기부식품 평균증가율을 반영하여 상향(60억원→91억원) **(자활근로자사업 참여자수)** 최근 3년간 자활사업 참여자 평균을 반영하여 상향(1,700명→1,925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보육 기반 강화)** 목표치를 계획 대비 실적률로 변경(10개소→90%)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건강증진과
제 목	6-13. 예산의 성과관리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지표는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위험요인 지속관리'로 최근 3년실적 평균치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 ○ 2022년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 대비 155%로 초과 달성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20년 ~ `22년까지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사업이 전환됨에 따라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 처리결과(계획) ○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반영하여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024년 예산 성과지표 변경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생활환경과
제 목	**6-14.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수소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수소차 보급 수 및 국가예산 확보액】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도내 수소충전소 지속 확충*, 친환경자동차 보급 적극 홍보, 도민들의 탄소중립 관심도 증가에 따라 수소차 수요가 증가하여 성과목표치 대비 초과 달성함 - 목표 : 462대 / 달성 : 857대(달성률 185%) * (충전소 현황) '21년까지 4개소 운영, '22년 5개소 추가구축, **총 9개소 운영** □ **처리결과(계획)**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음 - 목표 : 수소차 710대/국가예산 200억원 - 실적 : 수소차 458대/ 국가예산 356억원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물통합관리과
제 목	**6-15.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용담호 상수원 수질】【국가하천 유지보수】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용담호 상수원 수질)**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상수원 지킴이 활동, 유입하천 수질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성과목표치 대비 초과달성함 - 목표 : 0.02ppm / 달성 : 0.009ppm (달성률 222%) ○ **(국가하천 유지보수)** 환경부에서 '여름철 풍수해 대응' 목적으로 미교부했던 국비유보액(12억원)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성과목표치 대비 초과달성함 - 목표 : 40억원 / 달성 : 57억원 (달성률 143%) □ **처리결과(계획)** ○ 초과달성 지표에 대해서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변경 - **(용담호 상수원 수질)** 용담호 상수원 수질(T-P) → 용담호 상수원 수질(TOC) -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가하천 유지보수 → 국가하천 준설량 확대실시율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지역정책과
제 목	**6-16.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도시군 관리계획 등 결정안 등 승인】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급변하는 도시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사전검토 및 현장 출장 등 사전컨설팅을 통해 행정기간 단축으로 성과 목표 초과 달성 □ **처리결과(계획)** ○ 성과계획서 대면 컨설팅을 통해 지표가 합리적이고 적정하도록 '24년도 지표를 전면 수정하여 반영 완료하였음 - (당초) 도시군 관리계획 등 결정안 등 승인 건수 → (변경)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안 등 시·군 신청건수에 따른 심의 완료율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토지정보과</td></tr>
<tr><td>제 목</td><td>6-17.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검증실적외 2개지표】</td></tr>
<tr><td>개선내용</td><td>○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연도별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2">달성도</th><th rowspan="2">달성률(%)</th></tr>
<tr><th>목표치</th><th>실적치</th></tr>
<tr><td>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검증 실적</td><td>62%</td><td>100%</td><td>161</td></tr>
<tr><td>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td><td>15,000필지</td><td>21,357필지</td><td>142</td></tr>
<tr><td>지적공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관리 공모사업 발굴</td><td>1건</td><td>2건</td><td>200</td></tr>
</table>
○ 국정시책 합동평가와 연관된 지표로써 시·군 자체 신규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초과 달성 사유 발생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검증 실적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실적 지표의 ’23년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적관리 공모사업 발굴 지표의 실적 및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24년도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 검증 실적) (’23) 64% → (‘24) 66%
(지적불부합지 정리 실적) (’23) 20,000필지 → (‘24) 26,400필지
(지적공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관리 공모사업 발굴) (’23) 1건→ (‘24) 1건</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미래산업과</td></tr>
<tr><td>제 목</td><td>6-18.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신성장 동력 사업 발굴】</td></tr>
<tr><td>개선내용</td><td>○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성과지표(단위)</th><th>측정산식</th><th>목표대비
달성률</th><th>'22년
달성성과</th></tr>
<tr><td rowspan="3">신성장 동력사업 발굴</td><td rowspan="3">신규시책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td><td>목표</td><td>20건</td></tr>
<tr><td>실적</td><td>39건</td></tr>
<tr><td>달성률(%)</td><td>195%</td></tr>
</table>

○ ‘22년 대통령 및 도지사 취임으로 새로운 국정과제 및 도지사 공약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확대 필요에 따른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초과 달성

□ 처리결과(계획)
○ ’22년도 달성 실적 및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지표 목표치 상향
*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성과목표 : ’22년 20건 → ’23년 25건</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에너지수소산업과
제 목	**6-19.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액】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성과지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액 - 목표 : 110억 / 실적 : 223억 - 측정산식 : 국가예산 확보 및 관련 인프라 추진 ○ **(초과달성 원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 본격화에 따른 국비 확보액 증가 ○ **(성과보고서 상 원인분석 누락사유)** 미달성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은 보고서에 작성하였으나, 초과달성 지표는 원인분석 및 사유에 대해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성과보고서에 초과달성 지표 원인분석 결과 포함하여 작성 ○ **(성과목표치 설정)** 전년도 성과 달성 실적 및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목표치 상향 완료 * 신성장 동력사업 국비 확보액 : '22년 110억 → '23년 120억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탄소바이오산업과</td></tr>
<tr><td>제 목</td><td>6-20.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바이오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평가·인증지원 실적】</td></tr>
<tr><td>개선내용</td><td>○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성과지표(단위)</th><th>측정산식</th><th>목표대비
달성률</th><th>'22년
달성성과</th></tr>
<tr><td rowspan="3">바이오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R&D 및 평가·인증지원 실적</td><td rowspan="3">바이오융합산업 관련 사업추진 실적 분석</td><td>목표</td><td>20건</td></tr>
<tr><td>실적</td><td>28건</td></tr>
<tr><td>달성률(%)</td><td>140%</td></tr>
</table>
○ 화장품산업, 소재산업 다양화로 기술혁신 기업지원 건수 증가에 따른 성과목표 초과 달성

□ 처리결과(계획)
○ 전년도 성과 달성 실적 및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목표치 상향
* 24년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 20건 → 22건</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농생명식품과</td></tr>
<tr><td>제 목</td><td>6-21.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td></tr>
<tr><td>개선내용</td><td>○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성과지표 현황>
<table>
<tr><th>성과지표(단위)</th><th>측정산식</th><th>목표대비
달성률</th><th>'22년
달성성과</th></tr>
<tr><td rowspan="3">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td><td rowspan="3">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td><td>목표</td><td>970억원</td></tr>
<tr><td>실적</td><td>1,407억원</td></tr>
<tr><td>달성률(%)</td><td>145%</td></tr>
</table>
○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직매장 수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로 초과 달성

□ 처리결과(계획)
○ 전년도 실적 등을 비교 분석하여 ‘23년 목표치 상향(3%↑) 조정
- (’22) 매출액 목표치 970억원 → (’23) 매출액 목표치 1,000억원</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동물방역과
제 목	**6-22. 예산의 성과관리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유기동물 보호 수】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동물등록률 증가 및 반려동물 양육문화 개선으로 전국 및 전북 유기동물발생 건수 감소 ○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사업량 확대에 따라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로 새끼고양이 입소 감소 □ **처리결과(계획)** ○ 지표설정 미흡으로 인한 2023년 성과지표 변경 ('22년)유기동물 보호 수 → ('23년)동물등록 마릿수 ○ 향후 성과지표 및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설정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교육협력추진단
제 목	6-23.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대학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활성화】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도정 역점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대학생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지역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 도내 참여대학 정규학기에 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생들의 도정 시책 아이디어 발굴 진행 - 도내 참여 가능한 대학의 수를 고려하여 지표를 설정하였으나 실제 참여 대학에서 정규학기 과목을 개설,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발굴하였기에 당초 목표 대비 353% 초과 달성함 □ 처리결과(계획) ○ 본 사업은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대학(원)생 지역발전 정책제안 발표대회*'와의 사업 유사성을 감안하여 2022년 사업 종료 * 국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 공모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의회사무처
제 목	**6-24.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의정활동지원 수요자 만족도】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제11대 도의회(18.7.1.~22.6.30.) 의정활동 기간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임위 국외정책연수 및 국제교류 정상추진 불가로 활동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됨에 따라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국제교류 및 협력 업무 추진이 불가하여 영상 회의 및 교류를 실시하였으며(중국 강소성 - 2회), 펜데믹 종료 후 국외 정책 연수 및 국제 교류를 추진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2023년 지표 목표 설정 시 전년도 실적과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음 ※ ('22년) 90점 → ('23년) 78점 → ('24년) 78점 ○ 향후 의정활동 지원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제 목	6-25.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 설정 미흡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가 비율】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시군 과학영농 시설(토양검정실, 농산물안전분석실 등)을 활용하여 토양검정, 잔류농약 등의 분석을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친환경 실천농가 증가에 따라 초과달성 - 목표 12%, 실적 17.3% (달성률 144%) □ **처리결과(계획)** ○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가 비율’ 해당지표의 목표를 상향 조정 -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농가 비율 (‘23)12% → (’24) 16%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도립미술관
제 목	6-26.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지표설정 미흡 【미술관 전시에 대한 관람객수】【시각예술사 연구 및 소장작품 수집】
개선내용	○ 성과지표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 초과달성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기재함으로써 미달성 및 초과달성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 및 추진상황을 반영한 적정 목표치를 설정하여 과도한 미달성 및 초과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미술관 전시에 대한 관람객수)**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어 목표값을 상향 설정하였으나, 전시 기획력 향상 및 복합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관람객수가 증가되어 목표값 초과달성 ○ **(시각예술사 연구 및 소장작품 수집)** 2022년 지표산식인 시각예술사 연구 및 소장작품 수집의 경우 2021년 지표(작품수집)를 보완하여 시각예술사 연구건수를 추가 하였으나, 9점의 작품이 기증되어 초과 달성함 □ 처리결과(계획) ○ **(미술관 전시에 대한 관람객수)** 최근 3년간 실적 및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24년 목표치를 상향(100,000명→140,000명) 설정 ○ **(시각예술사 연구 및 소장작품 수집)** 외부 요인(작품 기증)으로 인하여 지표 설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성과지표를 시각예술사 연구 및 기획전시 건수로 변경하였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자치행정과
제 목	**7-1.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2023 세계잼버리 지원】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잼버리 참가자 수를 고려한 단계별 공사 추진으로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시기 미도래(‘23.12. 공사준공) 하였고 ○ ’22.12.23. 행정안전부에서 ’22년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부득이 간주예산으로 20억이 추가 편성되어 예산을 이월처리 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설치공사 신속 추진하여 ‘22년 이월예산을 조기 집행(’23.3월)하였으며 ○ 잼버리 행사 종료 후 기반시설 철거공사(‘24.4월 준공)를 추진 중으로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문화산업과
제 목	**7-2.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행안부의 2단계 투자심사로 예상보다 일정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설계공모 공고가 2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며 또한 본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조달청에서 적정성 검토를 3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이 약 9개월정도 필요함에 따라 당초 예정보다 일정이 지연되었음 □ **처리결과(계획)** ○ 명시이월된 '22년 사업비 772백만원은 설계용역비 및 기타 행정절차에 필요한 용역비, 예비인증 수수료, 조달청 적정성검토 수수료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24. 6월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이며 '22년 이월 사업비 전액 집행 가능하며 본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관광산업과
제 목	7-3.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지연에 따라 국비미송금(자금없는 이월) 및 도비 이월되었음 - 사업기간 변경 (기존) 2022. 6. 9. ~ 2023. 3. 31. (변경) 2022. 6. 9. ~ 2023. 6. 30. □ **처리결과(계획)** ○ ‘23. 5월 국비 송금되어 도비 이월예산과 함께 남원시에 교부완료하였음 (국비 500백만원, 도비 150백만원)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문화유산과
제 목	**7-4.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전라유학진흥원건립】
개선 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전라유학진흥원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비(주택 철거비 등)로 예산 17.5억원 ‘22. 8월 확보 ○ '22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도동서원지 유적 발굴조사 결과 추가 시·발굴조사가 필요하여 10월부터 추가조사를 추진하여야 하나 주택소유자의 이주 지연으로 조사 지연 ○ '22년 9~12월까지 전라북도 공공건축 심의, 원가심사·일상감사를 진행하였고, '22년 12월~'23년 2월까지 지반조사 추진 **□ 처리결과(계획)** ○ '23년 1~3월에 건축설계공모를 진행하여 당선작((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엔지)을 선정하여 설계용역 완료 및 설계비등 집행 완료(686,350천원) ○ '24년 3월 시공업체 및 감리업체 계약 완료 ○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을 통해 향후 이월이 없도록 설계, 공사 추진 시 사전 절차 검토, 집행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제 목	**7-5.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22.8월 설계 결과 자재비, 인건비 등 상승으로 당초 계획 대비 변경기간 등 소요됨에 따라 2,248백만원 이월처리함 □ **처리결과(계획)** ○ '23.4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준공 이후 센터 사무집기 등 구입하여 자산취득비를 집행('23.12월~'24.3월)하였고, 직원채용('23.10월) 후 시범운영비 집행('23.11~12월)함 ○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를 기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제 목	**7-6. 지방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중단(‘22.7.11.) 되었지만, 의료기관에서 기존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미청구분이 있어 집행잔액을 이월 처리 □ **처리결과(계획)** ○ 코로나19 내국인 확진자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위탁 사업비(313백만원) 건강보험공단 교부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물통합관리과
제 목	**7-7. 지방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스마트하수처리장 구축 사업】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남원 스마트하수처리장 구축사업 환경부 세수 부족에 따른 국비 미송금으로 국비(자금없는 이월) 및 도비 이월되었음 □ **처리결과(계획)** ○ 국비 송금에 따른 이월예산* 남원시 교부완료 : ‘23. 6월 * 국비 785백만원, 도비 394백만원 - 스마트하수처리장 공사 착공 및 추진 : ’23. 8월 - 스마트하수처리장 구축사업 완료 : ’24. 12월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지역정책과
제 목	**7-8.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 국토부 발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22.9월에 확정통보되어 용역을 '22.11월에 착수하였으나 준공예정이 '23.5월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 추진 ○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22.7월 추경에 예산 이편성되었고 용역기간이 '22년 8월부터 '23.1월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 추진 □ **처리결과(계획)** ○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 용역 완료 및 이월예산 집행완료('23.6월) ○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용역 완료 및 이월예산 집행 완료('23.1월)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교통정책과
제 목	**7-9.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교통문화연수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교통문화연수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는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생활관 지붕에 35kW급(고정식)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2년 11~12월 중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태양광 원자재 수급난으로 부득이 사업추진이 지연됨 □ **처리결과(계획)** ○ '23년 2월 집행완료하여 교통문화연수원 태양광 발전설치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였으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주택건축과
제 목	7-10.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선정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확정(‘22.12.23.)되었으며 국비 4,932백만원이 ’22.12.29. 교부됨에 따라 ‘22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명시이월된 국비 4,932백만원 시군 교부 완료(‘23.1.26.)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농촌활력과
제 목	**7-11.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시설비)】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이월 -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22.6월 -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22.6.~7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2.11.~12월 **□ 처리결과(계획)** ○ 설계용역 선금 및 준공금 지급으로 이월예산 집행 완료 - 공공건축 심의(도) 및 일상감사, 원가심사 완료 : ´23. 12월 - 건축설계공모 및 선정 완료 : ´23. 1.~3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3. 4.~12월 ○ 차후에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수산정책과
제 목	**7-12.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어촌뉴딜】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사업 대상지 5개소 중 군산시 2개소(두리도, 서래포구)는 '22년 9월에 착공하여 국비 100% 교부, 미착공 3개소(고창 고리포, 부안 치도, 왕포작당)는 국비 80%만 교부되었고, 미교부된 20%는 이월 처리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23.6월 국비 송금되어 도비 이월예산과 함께 교부 완료(국비 1,610백만원, 도비 207백만원)하였으며 5개소 모두 '24. 10월 준공 예정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자원경영과
제 목	7-13.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데이터 서비스】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22년 2차추경에서 예산 성립(7월)하였으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용역사업 착수('22.12월)가 늦어짐에 따라 이월처리 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이월금액 중 70백만원은 사업변경을 하여 2개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23년 중에 3개 사업 모두 완료 하였음 - 혁신밸리 데이터 수집·분석 및 서비스 학술연구 사업완료('23년 6월) - 혁신밸리 경영데이터 수집분석 및 서비스 개발('23년 6월) - 혁신밸리 음성인식기반 생육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개발('23년 11월) ○ 향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및 신속한 행절절차 이행으로 사업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농식품인력개발원
제 목	**7-14. 지방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재료비 등)】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2022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사업기간 연장 승인 요청 및 승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3202, 2022.12.27.) ○ 스마트팜 청년창업교육 교육이 매년 6월(수료)까지 진행됨에 따라 시기 미도래('23.6.)로 집행잔액 명시 이월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명시이월 금액 460백만원 집행 완료('23.06.30.)하고, 집행잔액 167백만원 발생하여 반납 예정 ○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추진과 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동물위생시험소
제 목	**7-15.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신축(시설비 등)】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 -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21.12월 - 공유재산 심의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22.4.~6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보완 : ′22.10.~′23.2월 - 공공건축 심의(도) 및 일상감사, 원가심사 완료 : ′23. 3월 - 설계업체 공모 및 선정 완료 : ′23. 4.~5월 □ **처리결과(계획)**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공기단축을 통한 신속한 공사진행 및 시공업체 선급금 집행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23. 12월 - 정밀검사시설 건축 인허가 : ′24. 1월 -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 ′24. 2월 - 정밀검사시설 건축 착공 : ′24. 2월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수산기술연구소
제 목	**7-16. 지방 보조사업 효율적인 집행관리 추진 필요**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개선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업무추진과 ○ 지방보조금 사업 이월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흰다리새우 스마트양식 실증 연구시설 건립 - 2021. 2월 해양수산부 친환경 양식어업육성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지만, 건립부지 매입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 추진 지연 - 신속하게 대체부지 마련하여 2021. 11월 매입하였고, 2022. 7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2. 11월 공사 착공함 - 착공후, 1차분 공사가 연내 준공 불가하여, 공사추진에 따른 감리비, 관급자재는 일부집행하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 추진 * (1차분) 2022. 11. ~ 2023. 4월 / (2차분) 2023. 4. ~ 2023. 12월 □ **처리결과(계획)** ○ 공사 완료 및 이월예산 집행 완료 ○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향후 이월이 없도록 설계, 공사 추진 시 사전 절차 검토, 집행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예산과</td></tr>
<tr><td>제 목</td><td>8-1.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 목표 달성률 제고</td></tr>
<tr><td>개선내용</td><td>○ 성인지예산 집행률(99.93%) 대비 성과목표 달성률(89.28%)이 저조하므로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하되, 사업부서에 대한 성인지 예산관련 교육 실시 권고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 내역】
<table>
<tr><th>구분</th><th>실과</th><th>대상사업</th></tr>
<tr><td>계</td><td>27개</td><td>42개</td></tr>
<tr><td>성인지예산 대상 재검토사업</td><td>7개</td><td>8개</td></tr>
<tr><td>성인지예산 목표치 부적합 사업</td><td>12개</td><td>17개</td></tr>
<tr><td>성인지예산 목표 및 실적 오류 수정이 필요한 사업</td><td>8개</td><td>17개</td></tr>
</table></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기준은 ①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 사업 ②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 사업 ③자치단체 주력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과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이며,
○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시 성평등 기대효과나 성별 수혜 분석이 어려운 사업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사업부서의 목표 설정 시 철저한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한 목표 설정 노력이 미흡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여성가족과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성인지예산 편성 시 철저한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제외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23. 8. 24.에 사업부서에 대한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성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여성가족과</td></tr>
<tr><td>제 목</td><td>8-2.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 목표 달성률 제고</td></tr>
<tr><td>개선내용</td><td>○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 2022회계연도 사업별 성인지 결산서에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성평등 효과 분석의 2021, 2022 실적치 불일치</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시 성평등 기대효과나 성별 수혜 분석이 어려운 사업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목표 설정 시 철저한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한 목표 설정 노력이 미흡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2022년 결산검사 개선권고 내용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목표를 재설정하고 관련도가 낮은 사업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음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 내역>
<table><tr><th>구분</th><th>대상사업 수</th><th>처리결과</th></tr><tr><td>계</td><td>12개</td><td></td></tr><tr><td>성인지예산 대상 재검토사업</td><td>1개</td><td>성인지예산 제외</td></tr><tr><td>성인지예산 목표치 부적합 사업</td><td>2개</td><td>목표치 재설정</td></tr><tr><td>성인지예산 목표 및 실적 오류 수정이 필요한 사업</td><td>9개</td><td>오류수정 완료</td></tr></table></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정책기획관
제 목	**8-3.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도정 성과 평가】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도민평가단은 선정시 전북특별자치도내의 불특정 도민을 대상으로 평가단을 구성(2년 임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분류가 부적합하여 성인지 대상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되었음 □ **처리결과(계획)** ○ 예산부서와 협의 시 이견이 있어 '24년 성인지대상사업에 포함되었으나 차후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성인지 예산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추진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청년정책과
제 목	**8-4.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율 제고** 【인구 인식개선 강화】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기존 목표치는 양성이 골고루 교육에 참여한다는 전제 하에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교육 횟수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목표치에 양성평등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목표치 재설정 사업으로 분류되었음 □ **처리결과(계획)** ○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취지에 맞게 남녀 골고루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인구인식 개선을 위한 목표치 재설정* * ('23)도민 인구교육 횟수(9회) → ('24)도민 인구교육 여성 신청자 비율(40%) ○ '23년 하반기부터 찾아가는 도민 인구교육 추진 결과보고에 성별을 구분하여 참석자 수를 기재하여 교육 참여 비율 파악함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법무행정과
제 목	**8-5.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자치입법 역량강화】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법제처와 도가 함께 주최하는 법제교육(공무원의 법제업무 능력 향상) 특성상 성별 구분 없이 시·도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므로 성별 구분 없이 전체 참석자 수로 목표치를 설정 □ **처리결과(계획)** ○ 목표치 및 실적치 설정을 교육참석자 중 여성교육참석자 수로 변경* 하였으며, * 성과목표: ('23)교육참석자(70명) → ('24)여성 교육 참석자 수(115명) ○ 향후 여성공무원의 법제교육 참여를 독려하여 특정 성별에 치우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안전정책과
제 목	**8-6.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재난 및 안전활동 단체지원】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본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활동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안전훈련,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남성위주의 안전활동을 지양하고 여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양성이 평등한 안전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하였음 ○ 다만,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서 본 사업은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수혜를 받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대상(시·군 및 안전 취약계층 등 불특정다수)이 달라 성별수혜 분석이 다소 어려운 사업임 □ **처리결과(계획)** ○ 여성가족과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2024년 성인지예산 편성 시('23년 하반기) 철저한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양성평등 등 성인지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목표를 변경하였음 * 성과목표 : '22년 집행액→ '24년 여성참여자수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자치행정과</td></tr>
<tr><td>제 목</td><td>8-7.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율 제고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td></tr>
<tr><td>개선내용</td><td>○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table>
<tr><th>세부사업</th><th>검사의견</th><th>사유</th></tr>
<tr><td>자치단체 간
협력강화</td><td>성인지 대상 검토</td><td>성별이 어려운 사업으로 양성평등사업으로 분류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td></tr>
<tr><td>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td><td>목표치 부적합</td><td>성과목표를 사업비 집행률로 설정하여 성인지 예산사업의 목표로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td></tr>
</table>
□ 처리결과(계획)
○ (자치단체간협력강화)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24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음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성인지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목표를 변경하였음
* 성과목표 : 사업비 집행률 → 지역협의회 여성위원 수</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체육정책과
제 목	8-8.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본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시·군 공공시설에서 일반 및 어르신 등 생활체육 입문과정을 지도·운영하는 사업으로 ○ 국민체육공단에서 주관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65개 종목으로 한정하고 있고, 각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수요에 따른 지도자를 채용하고 있음 ○ 생활체육특성상 지도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적고,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에 성인지대상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됨 □ 처리결과(계획) ○ '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사회복지과
제 목	**8-9.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율 제고** 【긴급복지 지원 등 4개 사업】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성인지 대상 재검토 사업 - 긴급복지지원 : 저소득층의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 - 노숙인 시설운영 : 노숙인시설 입소자 지원 ○ 목표치 부적합 사업 - 노숙인 시설운영 :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규모(연도별 운영비 지원액)를 목표치로 설정 -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지원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대상자 중 여성비율(희망저축, 청년내일키움통장 가입자수)을 목표치로 설정 □ **처리결과(계획)** ○ 긴급복지지원 등 4개 사업 모두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으로 ‘24년 성인지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보건의료과
제 목	8-10.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율 제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농어촌의료기관으로 성별에 대한 차별은 없으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여성 노인이 남성보다 많으므로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처리결과(계획)**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으로 ‘24년 성인지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기후환경정책과
제 목	**8-11.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목표 설정 소홀**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활동이 부족한 성별 활동 확대를 목표치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성과목표를 포괄적으로 작성하여 성과지표와 연계성이 부족하였음 ○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이 없는 사업임에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인지 예산 편성의 본래 목적 달성에 미흡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관련 부서(예산과,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거쳐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이 낮은 사업으로 ‘24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주택건축과
제 목	**8-12.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도시재생 아카데미 및 지원센터 운영」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모든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등을 추진 사업으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분류가 부적합하여 성인지 대상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 □ **처리결과(계획)**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2024년부터 성인지예산에서 제외하였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농산유통과
제 목	**8-13.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율 제고**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사업목적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을 통해 대도시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이며 ○ 주요 홍보대상이 주부로 사업 수혜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관련 부서(예산과,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거쳐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이 낮은 사업으로 '24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교육협력추진단
제 목	8-14.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의 총 인원수를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음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동반자(상담전문가)가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심리·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제공 □ 처리결과(계획) ○ 2024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성과목표를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남성청소년 비율’로 수정하고 목표치를 47%로 설정함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농식품인력개발원
제 목	**8-15.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율 제고**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전북)】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마이스터대학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신청을 받아 모집하는 것으로 성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성인지 예산으로 선정하였음 □ **처리결과(계획)** ○ 관련 부서(예산과,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거쳐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이 낮은 사업으로 '24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였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금융사회적경제과
제 목	8-16.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율 제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2차)(전환사업)】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 2022회계연도 사업별 성인지 결산서에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성평등 효과 분석의 2021, 2022 실적치 불일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취업 취약계층 **416명**('22)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 지원

시군	합 계	성 별	
		남	여
합 계	**416**	**136(32.69%)**	**280(67.31%)**
전주	56	5	51
군산	102	35	67
익산	35	15	20
정읍	19	4	15
남원	18	6	12
김제	21	9	12
완주	20	2	18
진안	10	-	10
무주	8	2	6
장수	16	6	10
임실	28	10	18
순창	23	8	15
고창	18	6	12
부안	42	28	14

○ 2022회계연도 사업별 성인지 결산서에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성평등 효과분석의 실적치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있었음

□ **처리결과(계획)**

○ 해당 사업지표의 목표치 및 실적값을 확인하여 오류 수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오류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table>
<tr><td>부서명</td><td>총무과</td></tr>
<tr><td>제 목</td><td>8-17.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td></tr>
<tr><td>개선내용</td><td>○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 2022회계연도 사업별 성인지 결산서에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성평등 효과 분석의 2021, 2022 실적치 불일치</td></tr>
<tr><td>처리결과
또는 계획</td><td>□ 추진경과
○ 사업수혜자 48명에 대해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별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추진
<table>
<tr><th>구 분</th><th>2022년</th><th>비 고</th></tr>
<tr><td>계</td><td>48명</td><td></td></tr>
<tr><td>여성(비율)</td><td>27명 (56.3%)</td><td></td></tr>
<tr><td>남성(비율)</td><td>21명 (43.7%)</td><td></td></tr>
</table>
○ 2022회계연도 사업별 성인지 결산서에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성평등 효과분석의 실적치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있었음

□ 처리결과(계획)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해당 사업지표의 목표치 및 실적값을 확인하여 오류 수정하였으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목표치 현실화 및 오류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음</td></tr>
</table>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제 목	**8-18.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장애인인권강사 양성 및 파견교육】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 2022회계연도 사업별 성인지 결산서에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성평등 효과분석의 2021, 2022 실적치 불일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2022년 실적 4,311명, 사업수혜자는 439명으로 성과목표 대비 성평등 효과분석 자료 불일치로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음 ○ 장애인인권강사 양성사업의 2022년 사업실적은 강사양성과정 교육생 10명(남5, 여5)으로 성과 목표 달성 현황 자료의 실적치 자료 입력에 오류가 있었음 □ **처리결과(계획)** ○ 2022회계연도 사업별 성인지 결산서의 사업수혜자 오류 수정완료 하였으며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수혜 대상의 실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대외협력과
제 목	**8-19. 성인지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율 제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시군)】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 2022회계연도 사업별 성인지 결산서에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성평등 효과 분석의 2021, 2022 실적치 불일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하고 장려 - ('20~'22 실적) (남) 162,668(42.48%), (여) 220,220(57.52%)명 지원 ○ 실적치에 일부 오기가 존재하여, 1365자원봉사포탈 자원봉사활동 통계값으로 오류 수정

<자원봉사활동 실인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성 별	
		남	여
합 계	**382,888**	**162,668(42.48%)**	**220,220(57.52%)**
2020년	158,490	68,121(42.98%)	90,369(57.02%)
2021년	125,598	51,627(41.10%)	73,971(58.90%)
2022년	98,800	42,920(43.44%)	55,880(56.56%)

□ **처리결과(계획)**

○ 해당 사업지표의 목표치 및 실적치를 확인하여 오류 수정하였으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오류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음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처리결과

부서명	119대응과(구조구급과)
제 목	**8-20.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개선과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구급체계 확립 운영경비】
개선내용	○ 특정 성별 활동 확대와 관련 없는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발굴 ○ 대상 사업과 사업지표 선정을 구체화하고 목표값 설정 오류 및 과소 설정 목표치에 대한 현실화 필요 ※ 2022회계연도 사업별 성인지 결산서에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성평등 효과분석의 2021, 2022 실적치 불일치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추진경과** ○ 성과목표는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 중 여성의 수로 사업수혜자는 하트세이버(환자의 소생에 기여한 자)를 수여받은 여성의 수로 각각 설정하였음 ○ 목표치와 사업수혜자의 설정기준이 달라 2022회계연도 사업별 성인지 결산서에서 성과목표 달성현황과 성평등 효과분석의 실적치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있었음 □ **처리결과(계획)** ○ 해당 사업지표의 목표치 및 실적치를 확인하여 오류 수정하였으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오류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음